

2021

**한옥 정책·제도·사업
안내서**

(auri) 건축공간연구원

목 차

01	한옥 정책의 현재	9
02	한옥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	
1)	한옥의 정의	15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0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41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47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62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74
2)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77
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79
4)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82

2. 문화체육관광부

1)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87
2)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90
3) 전통한옥 활성화 홍보마케팅	95

3. 농림축산식품부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97
2) 농어촌 민박사업	99

4. 농촌진흥청

1)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설계도서 배포	100
----------------------------	-----

5. 문화재청

1)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103
2)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106

6. 산림청

1)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	109
2) 귀산촌인 주택구입 융자 지원	110
3) 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 융자 지원	111
4) 공공목조건축 우수사례 포상	113

7. 행정안전부

1)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114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16

05 지방자치단체 한옥정책 추진 우수사례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한옥의 관리

1) 돈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123
2)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126

2. 한옥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사례

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기반 구축	130
---------------------	-----

부록

1. 한옥건축기준

139

2.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142

2021

한옥 정책·제도·사업
안내서



수원시 장안동 관광안내소 및 문화시설 (2015)

담당부서: 수원시 문화예술관 문화시설팀 / 수원문화재단

지원액: 2.0억원

사진: 오상민



01

한옥 정책의 현재

한옥 정책의 현재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을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이 발표되었다.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의 한옥 관련 과제로는 ①전통한옥의 보전·관리 및 활용, ②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③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④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⑤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정원모델 개발 등이 선정되었다.

2008년에는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09년, 한옥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R&D를 추진하는 등 한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지속되어왔다.

이후 2010년 2월 18일, 「건축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대상으로 한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¹⁾ 같은 해 5월부터는 6개 부처(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現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前농림수산식품부, 前외교통상부, 산림청) 합동으로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을 발표하면서 법정부 한옥정책이 추진되었다. 新한옥플랜은 ‘2020년 한옥 르네상스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한옥을 보급·확산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활용하여 국가품격을 제고하고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다. 한옥의 보급·확산, 기술개발 및 산업화, 한옥 보전·관리, 한옥의 적극적 활용 4개의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2015년 6월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한옥의 정의가 개편되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는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적극적 보전·활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기존의 지자체 한옥 지원 조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재정비되었다. 법률 시행과 같은 해인 2015년, 전국에 지어지는 다양한 한옥에

1) 이종민, 이민경, 김종범. (2020). 한옥정책,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8.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 재료,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한옥건축기준」이 고시되었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정책적 실천과제가 담긴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9년에는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한옥의 구조 안전 확인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편이 마련되었다.

2020년에는 한옥 교육과정의 품질 제고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새롭게 만나는 건축자산’을 비전으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한옥과 관련 추진과제로는 ①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②한옥건축양식 확산 유도, ③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 ④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가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2021년부터는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에 따른 한옥 우수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이 시작되며, 「한옥건축기준」의 재검토가 추진된다.

2002 한옥 지원조례 제정

2007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2007~2011)' 발표 (2007.2.)

- 문광부, 국토부, 농림부, 외교부, 문화재청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 전통문화의 핵심이면서 자생력이 부족한 6대 분야(한옥, 한글, 한복, 한식, 한지, 한국음악)에 대한 육성계획 수립
- 한옥 관련 중점추진 과제: ①전통한옥의 보전·관리 및 활용, ②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③한옥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④공공시설 한옥디자인 보급 확대, ⑤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한국식 청원모델 개발)

2008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이 국정과제로 선정 (2008.2.)

「건축기본법」 제정 및 시행 (2008.6.)

- 이 법률을 토대로 2010년 수립된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한옥 관련 추진전략 포함

2009 한옥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R&D 추진 (2008.12.)

- 전통한옥의 브랜드 가치 계승 및 현대적 거주성능이 확보된 저렴한 대중한옥 개발을 위해 추진
-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하고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과업 수행

2010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10~2014)’ 발표 (2010.4.)

- 계획의 추진전략 중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의 보전·활용’에 한옥 관련 내용 포함
- 한옥 관련 중점추진 과제: ①기존 도심의 한옥지구 보전·재생 유도, ②농어촌 한옥마을 조성, ③한옥의 산업화와 현대화 기반 조성

‘국격향상을 위한 新한옥플랜(2010~2014)’ 발표 (2010.4.)

- 국간위·국토부·문광부·농림부·외교부·선관청 합동
- 국격향상 및 녹색성장에 한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 추진전략 마련
- 정책 부문별 전략 및 실천과제: ①한옥 보급·확산 – 농어촌 한옥 확산 | 한옥마을 활성화
②기술개발 및 산업화 – 설계·성능·시공기술 연구개발 | 한옥 관련 산업기반 구축
③한옥 보전·관리 – 설계·사공·전문인력 양성
④한옥의 적극적 활용 – 한옥의 멀실 방지 | 한옥의 보전 지원 | 한옥의 관광자원화 | 공공시설의 한옥 도입

201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 ※ 법률 제정: 2014.6.

「한옥건축기준」 고시 (2018.12.)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조성을 통해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발표

- 6대 실천과제 중 한옥 관련 과제로 ‘한옥조성 확대’ 및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이 선정

2019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고시 (2019.10.)

- 구조안전 확보대상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한옥의 구조안전 확인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구조기준(KDS 41 90 00)」에 전통목구조 면 신설

2020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고시 (2020.12.)

- 한옥 교육과정의 품질 제고 및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마련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발표

- 한옥 관련 과제로 ①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②한옥건축양식 확산 유도, ③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 ④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 제시

2021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2021.12.)

「한옥건축기준」 재검토 (2021.12.)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의 흐름

출처: 이종민, 이민경, 김종범. (2020). 한옥정책,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7.(국가한옥센터. (2019). 한옥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3. 재인용)를 참고하여 업데이트 후 재작성하였음

2021

한옥 정책·제도·사업
안내서



고창군 한옥체험마을 (2013)

담당부서: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지원액: 2.0억원

사진: 오상민

02

한옥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

-
- 1) 한옥의 정의
 -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한옥의 정의

◆ 법률상 정의

-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에 의하면,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할 수 있다.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뜻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정 이전의 ‘한옥’의 정의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 이전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기둥 및 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벗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
- ‘한식기와’, ‘목구조’, ‘자연재료’, ‘전통양식’이 한옥을 정의하는 주요 키워드로 작용해왔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옥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신기술이 가미된 부재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자연재료’의 기본 가치는 한옥의 정의에서 소멸
- 이는 ‘자연재료’를 한옥의 기본가치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한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옥으로 정의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

- **한옥마을**

「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상의 정의는 아니지만,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한옥마을의 개념을 10호 이상의 한옥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조례상 정의

- 제주 전통가옥²⁾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한옥의 정의를 법률상 정의와 같이한다. 하지만 제주전통가옥의 대부분은 석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상 한옥의 정의 중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 전통가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정의되어 있다. “제주 전통가옥”이란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한 한옥으로서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타법에서의 정의

- 한국전통호텔업³⁾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한국전통호텔업”이란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2. 호텔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제5호[시행 2020. 5. 1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27호, 2020. 5. 13., 일부개정]

3)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제1호의 2[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3호, 2021. 3. 23., 일부개정]

• 한옥체험업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한옥체험업”은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사. 한옥체험업

-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 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 · 등록된 한옥
 -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 (다)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 (3)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 (4) 객실 내부 또는 주변에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하고,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설치할 것
- (5)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관리할 것
- (6)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제1호의 3[시행 2021. 3. 23.] [대통령령 제31543호, 2021. 3. 23., 일부개정]

- (7) 월 1회 이상 객실·접수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 (8) 객실 및 욕실 등을 수시로 청소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
- (9)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어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0) 욕실의 원수(原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목욕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11)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영업시간 동안 배치할 것
- (12)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 정책대상으로서의 정의

• 한옥 공공건축물

“한옥공공건축물”은 법률상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국유 또는 공유이며 제도적으로 공공건축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한옥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충북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사진: 김가람

5) 김가람·신치후. (2019). 한옥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AURI 기본연구보고서. 7.

• 신한옥⁶⁾

“신한옥”은 법률상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나, 한옥 한국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과 외관을 기본으로 하되, 복합적인 구조방식과 혁신적인 시공방식, 성능 향상된 재료 등으로 구축된 건물을 의미한다. 신한옥은 미래 한국의 일상적인 주거문화로서 역사·문화·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1세기 서울형 한옥⁷⁾

법률상 정의가 포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한옥에 대한 지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책·제도·사업의 실행에 활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21세기 서울형 한옥”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한옥이 자생 또는 계획적으로 집합의 경관을 가지며 다양한 대지 및 거주조건에 적용 가능한 주거 및 주거 이외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한옥이었다면, 21세기 서울형 한옥은 기존 한옥의 요소에 입체적 공간활용이 가능하며, 공공, 민간, 상업 등의 다양한 주체의 요구에 만족하는 한옥이다.

- (미니한옥) 15평형 내외의 소형 한옥
- (골목집합형) 공동의 골목을 중심으로 미니한옥을 집합시킨 유형
- (마당집합형) 공동의 마당을 두고 개별의 집으로 들어가는 중소형 집합형
- (전통형) 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품위와 격식이 살아있는 유형
- (현대형) 부엌을 중심으로 모이는 현대적 생활에 적합한 유형
- (경사지형) 경사면이 많은 서울의 지형적 특성에 적응하며 들어서는 한옥
- (주상복합형) 주거와 상업(공방, 사무실, 카페 등)의 복합 유형
- (구법결합형) 아뜰리에 같은 작업공간을 다른 구법으로 결합시킨 유형

6) 이강민. (2013).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부동산포커스 6월호. 55.

7)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 <https://hanok.seoul.go.kr/front/kor/info/infoHanok.do?tab=1>(검색일: 2021.05.06.)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목적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 · 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법률상 "한옥"은 주요 구조가 기둥 · 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로 정의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이면서 현대 한옥의 범주를 수용하는 "한옥건축양식"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 · 경제적 · 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 · 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⁸⁾, 공간환경⁹⁾, 기반시설¹⁰⁾로 정의된다. 법률상 한옥과 건축자산이 다른 것으로 구분되나,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한 한옥도 건축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후술할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우수건축자산 등록,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등에 대한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주요 내용에서도 한옥과 건축자산은 체계를 같이한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9)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는 한옥 및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기반 구축, 조사·연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건축문화교육, 재원확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2016년에 수립되었으며,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중 추진과제4. ‘한옥 조성 확대’는 ①특화형 한옥마을 조성, ②한옥공공건축물 보급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내 한옥 관련 실천과제 현황

비전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	
목표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추진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자산 총조사 지원<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자산 기초조사 기반 구축 및 기록화 프로그램 등건축자산 기초연구<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자산 용어, 유형·가치 및 스토리텔링 요소 발굴 등국민공감 확산<ul style="list-style-type: none">건축자산 우수사례 발굴 공모전 및 주민참여형 교육 실시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한옥 조성 확대<ul style="list-style-type: none">특화형 한옥마을 조성, 한옥공공건축물 보급 활성화 등기술개발 및 산업육성<ul style="list-style-type: none">리모델링 기술지침 개발, 지역별 클러스터 등 산업기반 조성건축자산 활용 선도<ul style="list-style-type: none">공공 우수건축자산 활용 지원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시범사업 추진 등

•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 2021년에 수립된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은 ‘새롭게 만나는 건축자산’을 비전으로 2개 목표, 3개 추진전략, 13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추진전략3.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는 ①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②한옥건축양식 확산 유도, ③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 ④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가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1~2025)」 내 한옥 관련 실천과제 현황

비전	새롭게 만나는 건축자산		
목표	정책 및 산업 기반 강화를 통한 건축자산 보전·활용 활성화		
전략	건축자산 진흥 정책 추진기반 강화	건축자산 가치 증진 및 시장 활성화	한옥의 현대화 및 다양화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정책대상으로서 건축자산 구체화 및 관리체계 마련건축자산 인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 강화법정부적 협력형 사업 발굴 및 추진건축자산 진흥 지원 주체 설립 및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보전·활용 촉진 및 혼순방지를 위한 제도합리화건축자산 보전·활용 선도모델 조성소유자-활용자-전문가 연계 플랫폼 구축·운영리모델링 관리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옥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한옥건축양식 확산 유도다양한 용도의 한옥 보급 확대한옥 산업 전문성 강화

한국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건축자산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건축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7.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립 주기 :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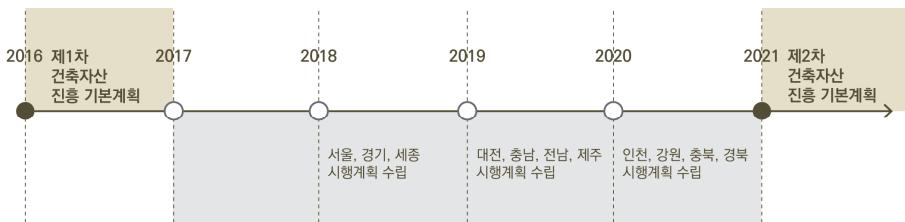
수립 주체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 주체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수립·시행 및 변경 : 대통령령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라면,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지역계획이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2021년 12월 기준)

한국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립 주기 : 기본계획에 따라 5년

수립 주체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심의 주체 : 광역건축위원회

수립·시행 및 변경 : 대통령령

◆ 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과 건축자산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구축되어야한다. 따라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필수적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①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해 기초조사가 필요하거나, ②시행계획 내용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을 포함한 경우, ③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한옥도시건축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옥건축 지원제도가 본 내용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옥건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한옥의 성능·재료·형태, 한옥마을의 규모·밀도, 도로·공공공간·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그 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년 12월 28일 고시된 ‘한옥건축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옥건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0호, 2018. 12. 28., 일부개정]

조항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2. "처마선"이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 3.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제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조항	세부내용
제4조 (주요구조부)	<p>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5.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지붕)	<p>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조항	세부내용
	<p>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과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 (외벽 및 창호)	<p>①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p> <p>③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은 적절히 차폐하여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제7조 (설비)	<p>①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토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p>
제8조 (마당 및 담장)	<p>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제9조 (재검토기한)	

◆ 국가한옥센터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現건축공간연구원)는 2011년부터 소내에 국가한옥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왔으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정 후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가한옥센터로 지정받았다.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는 한옥문화 진흥의 싱크탱크로서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사업을 지원하고, 한옥 정보 체계화를 위한 지식기반을 구축하며, 한옥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 연구·조사
 2. 한옥과 관련한 전문산업의 육성
 3. 한옥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 한옥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한옥센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한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한옥센터(이하 “국가한옥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한옥센터는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경비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옥 및 한옥마을 등과 관련한 기준의 연구
 2. 한옥과 관련한 우수사례 발굴 및 연구
 3. 한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을 위하여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설계 및 시공관리자 부문의 전문인력을 배출하였으며, 약 4년간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19년에 재개하여 현재(2021년)까지 총 1,1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전통건축학교, 그 밖의 기관을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우수기관을 인증할 수 있다. 인증의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고시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2021년 인증 첫 해에는 설계부문의 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시공(대목)부문의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가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다¹¹⁾.

◆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우수건축자산'은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 중,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는 대상물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우수건축자산'을 등록할 수 있으며,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의 가치(「한옥등건축자산법」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역사적 가치	가. 역사적 사건·인물 등과 관련 있는 것 또는 역사발전의 증거가 되는 것 나.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경관적 가치	가. 개별 건축물의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특정 범위 안에 모여 있는 건축물들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것 나. 오래된 도시조직을 유지하여 독특한 경관을 이루는 것 다. 건축물과 공간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는 것

11) 인증기간: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구분	내용
예술적 가치	가. 건축미 및 건축기술 등이 조성 당시의 건축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 나. 건축적 디자인, 장식 또는 기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다. 저명한 설계자·기술자 등과 관련 되었거나 공인된 시상 제도 등을 통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사회문화적 가치	가.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나.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 다. 지역적 특수성을 갖추거나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주어 지역문화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 라.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사향 외에 보전, 활용을 통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

전국 우수건축자산 등록 현황(2021년 12월 기준)

지역	연번	명칭	관리기관(부서)	등록시기
경기도	제1호	매향리 쿠니사격장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2016.6.
	제1호	체부동 성결교회	서울시 문화정책과	2017.3.
	제2호	대선제분 영등포공장	(주)대선제분	2019.5.
	제3호	캠벨 선교사 주택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제4호	북촌 한옥청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제5호	서울공예박물관 직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특별시	제6호	선린인터넷고등학교 강당	선린인터넷고등학교장	
	제7호	경복고등학교 체육관	경복고등학교장	2020.1.
	제8호	돈화문로		
	제9호	사직터널	서울시 도로계획과	
	제10호	명동 지하상가		
	제11호	공공일호(구 샘터사옥)	(주)공공그라운드	

◆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①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¹²⁾ 공동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¹³⁾.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¹⁴⁾.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주체¹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1.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자산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5.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및 용도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6.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배치·형태·색채·재료·건축선 및 외부공간 조성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7. 담장 및 대문, 외부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¹²⁾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계획지침 및 운용계획
8. 그 밖의 경관계획
9.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1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10.]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1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10.]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15)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동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주체¹⁶⁾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일부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¹⁷⁾. 또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특례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46조·제47조·제58조·제59조
-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6)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

17) 한국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10.]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지자체별 건축자산 관련 정책 추진현황(2020년 1월 기준)

시도	시행계획 수립	건축자산 기초조사	진흥구역 지정	진흥구역 관리계획	우수건축자산
서울특별시	●	●	● *	● *	11건 등록
부산광역시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대전광역시	●	●	● ***	● ***	-
광주광역시	○	○	-	-	-
울산광역시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경기도	●	○	-	-	1건 등록
강원도	●	○	-	-	-
충청북도	●	○	-	-	-
충청남도	●	○	-	-	-
전라북도	○	○	○ ****	○ ****	-
전라남도	●	○	● *****	● *****	-
경상북도	●	○	-	-	-
경상남도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완료 ○ : 시행 중 및 일부 완료

* 북촌 등 9개 / ** 중구 향촌동 / *** 동구 이사동 / ****(군산시)진흥구역 지정완료 및 관리계획 수립 중
(의산시)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추진 중 / ***** 나주시

▣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한옥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관련 규정	특례 적용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주심도리 윗면에서 종도리 아랫면까지의 공간에 설치하는 다텁으로서 그 실내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다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가.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나. 한옥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 건축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한옥 건축물의 경우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2호에 따른다.

2021

한옥 정책·제도·사업
안내서



구로구 글마루 한옥어린이도서관 (2010)

담당부서: 구로구청 문화관광과 도서관팀

지원액: 3.0억원

사진: 오상민



03

지방자치단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1. 한옥 관련 조례 현황

◆ 한옥 관련 조례

•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옥 관련 조례는 총 76건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정¹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한옥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관련 조례는 광역자치단체 16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60건으로 파악되며, 광역자치단체 중 조례가 부재한 곳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

- (서울특별시) 광역 1건, 기초 1건(성북구)
- (부산광역시) 광역 1건, 기초 1건(기장군)
- (인천광역시) 광역 1건
- (대구광역시) 광역 1건
- (광주광역시) 광역 1건
- (대전광역시) 광역 1건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 1건
- (경기도) 광역 1건, 기초 7건(수원시, 평택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주시 남한산성, 포천시)
- (강원도) 광역 1건, 기초 2건(춘천시, 평창군)
- (충청북도) 광역 1건, 기초 3건(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 (충청남도) 광역 1건, 기초 5건(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 (전라북도) 광역 1건, 기초 4건(전주시, 전주시2, 완주군, 임실군)
- (전라남도) 광역 1건, 기초 22건(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¹⁸⁾ 2014. 6. 3. 제정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상북도) 광역 1건, 기초 10건(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 (경상남도) 광역 1건, 기초 5건(밀양시, 거제시,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1건

-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한옥 관련 조례 제정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3개항을 마련하고 있으며(30.2%), 도내 22개
시·군 모두 한옥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이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10개), 경기도(6개), 경
상남도(6개), 충청북도(6개)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한옥 관련 조례 현황(2021년 7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한옥 관련 조례 목록(2021년 7월 기준)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5. 2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 12. 31.	제정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 7. 13.	제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7. 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12. 24.	제정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12. 28.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6. 3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6. 10. 31.	제정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1. 8.	일부개정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2021. 1. 7.	일부개정
	평택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8. 12. 18.	제정
경기도	남양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16. 6. 9.	제정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	2019. 2. 15.	제정
광주광역시	광주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7. 12.	제정
	광주시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른 전통한옥지원 조례	2020. 1. 3.	일부개정
	포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7. 1.	제정
강원도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11. 8.	일부개정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2019. 11. 14.	일부개정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 6.	제정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비고
충청북도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7. 11. 10.	제정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10. 8.	일부개정
	청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19. 11. 1.	일부개정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2019. 3. 15.	일부개정
충청남도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2. 20.	일부개정
	천안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 1.	일부개정
	아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6. 5.	제정
	서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9. 25.	일부개정
전라북도	홍성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4. 15.	제정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2. 1.	제정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5. 29.	일부개정
	전주시 한옥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5. 15.	제정
전라남도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 조례	2015. 12. 30.	일부개정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	2021. 7. 1.	일부개정
	임실군 한옥 지원 조례	2019. 5. 31.	제정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4. 8.	전부개정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2020. 3. 6.	일부개정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18. 9. 18.	전부개정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2021. 5. 4.	일부개정
	담양군 한옥 지원 조례	2020. 5. 11.	일부개정
	강진군 한옥 지원 조례	2016. 10. 7.	일부개정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비고
경상북도	고흥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19. 12. 23.	일부개정
	목포시 한옥 지원 조례	2015. 8. 3.	일부개정
	순천시 한옥 지원 조례	2019. 11. 12.	일부개정
	신안군 한옥 지원 조례	2017. 12. 28.	일부개정
	구례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10. 12. 31.	일부개정
	곡성군 한옥 지원 조례	2020. 12. 30.	일부개정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	2017. 12. 27.	일부개정
	무안군 한옥지원 조례	2020. 7. 20.	일부개정
	보성군 한옥지원 조례	2019. 4. 10.	일부개정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2019. 12. 12.	일부개정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2020. 8. 10.	일부개정
	장성군 한옥 지원 조례	2018. 10. 30.	일부개정
	장흥군 신축한옥 지원 조례	2017. 12. 29.	일부개정
	진도군 한옥지원 조례	2019. 9. 25.	일부개정
	함평군 한옥 지원 조례	2020. 7. 15.	일부개정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	2021. 3. 9.	일부개정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11.	일부개정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5. 12. 31.	제정
	포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21. 7. 13.	전부개정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 조례	2020. 11. 18.	일부개정
	김천시 한옥 지원 조례	2017. 11. 23.	제정

지역	조례명	제·개정일	비고
경상남도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8. 3. 2.	전부개정
	의성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2018. 10. 10.	일부개정
	청송군 한옥 지원 조례	2015. 12. 31.	제정
	고령군 주택개량 및 한옥형 주택의 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	2019. 3. 29.	일부개정
	성주군 한옥 지원 조례	2017. 12. 28.	제정
	칠곡군 한옥지원 조례	2018. 8. 14.	제정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2019. 5. 13.	제정
	경상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2019. 3. 28.	제정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	2020. 10. 8.	제정
	거제시 한옥지원 조례	2015. 11. 24.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창녕군 한옥 지원 조례	2020. 12. 28.	일부개정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2019. 8. 30.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거창군 한옥 지원조례	2015. 7. 2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기록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5. 13.	일부개정

2.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 관련 조례의 구성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 관련 조례의 구성

지자체	정의	건축	유지	우수	진흥	진흥	한옥	한옥	한옥	전문	기타
		자산	보수	건축			건축	양식	매수		
서울특별시		●	●	●	●		●	●	●		
부산광역시		●	●			●					
인천광역시	●	●	●		●		●	●			
대구광역시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경기도	●	●	●	●		●	●	●			
강원도	●	●	●	●		●	●	●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
경상북도		●	●	●		●					
경상남도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한옥보호지역일 경우 / ** 한옥발전기금

한옥 관련 주요내용

- 정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한옥 관련 조례에서는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한옥’, ‘한옥건축 양식’, ‘건축자산’을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상 정의가 부재한 ‘우수건축자산’, ‘한옥마을’,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한옥 신축’, ‘한옥의 소유자 등’, ‘제주전통가옥’, ‘제주 돌담’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서 마련하고 있다.

- **(우수건축자산¹⁹⁾** 시·도지사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
- **(한옥마을)**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
-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²⁰⁾ 중 한옥을 활용한 사업과 한옥체험업(세종),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에 가치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제주)
- **(한옥신축)** 건축물²¹⁾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
- **(한옥의 소유자 등)** 한옥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²²⁾
- **(제주전통가옥)** 한옥²³⁾으로서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
- **(제주돌담)** 공간환경²⁴⁾으로서 제주의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하고 제주 지역의 전통 축조 방식을 반영하여 쌓은 담장

19)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2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기록 및 라목

21) 「건축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2) 「건축법」 제2조제12호

2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4)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

• 건축자산 기초조사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진흥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²⁵⁾,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제출요청 사유, 제출기한, 제출 방식 및 형태, 자료 내용, 자료 활용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결과보고서는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해당 시·도 건축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유지보수사업자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²⁶⁾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²⁷⁾. 단, 주된 영업소재지가 시·도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에서는 이들을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로 명명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²⁸⁾·건설업 등록을 한 자²⁹⁾,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한 자³⁰⁾,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³¹⁾, 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³²⁾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각 광역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2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2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8) 「건축사법」 제23조

29)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30)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3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경상북도의 경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시 그 심사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사업운영계획서, 건축자산의 유지·보수 관련업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등 적절성, 지출항목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인력 운영 계획,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향후 기대효과 및 건축자산의 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정도의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도에서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를 그 조건으로 명기하고 있다.

• 우수건축자산 지원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 감면 및 기술·소요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세감면)**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조세 감면의 내용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시·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³³⁾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의 조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술 및 소요비용지원)**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으로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시·도의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의 범위는 광역지자체별로 항목과 그 비용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광역지자체별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범위 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다.

3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우수건축자산의 기술 및 소요비용지원 항목

지자체	기술자문 및 감독	지식·정보 수집, 제공	홍보 및 주민교육	유지·보수 관련 사업	관광자원화 사업	기타
서울특별시	●	●	●	●	●	
부산광역시	●	●	●	●	●	●
인천광역시	●	●	●	●	●	
대구광역시	●	●	●	●	●	
광주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경기도	●	●	●	●		●
강원도	●	●	●	●		●
충청북도	●	●	●	●	●	
충청남도	●	●	●	●	●	
전라북도	●	●	●	●	●	
전라남도	●	●	●	●	●	
경상북도	●	●				●
경상남도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진흥구역 지원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³⁴⁾에서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방범시설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마을회관 등의 문화복지시설³⁵⁾을 지원할 수 있다.

34)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의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등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 건축자산진흥구역 협의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주민

-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 **(역할)** 협의체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 및 의견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의견 전달자 역할 등의 역할 수행 또한 요구된다.

- **(구성)** 협의체의 위원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시·도의회 의원·시민단체·전문가·관련 공무원·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상남도의 경우 당연직 위원은 건축자산 진흥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 한옥건축 지원

각 조례는 시·도지사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의 대상은 한옥 건축과 관련한 신축, 증축·재축·이전·리모델링, 보수 및 수선, 한옥마을 기반시설 구축, 한옥마을 조성이다. 지원의 내용은 재정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 등으로 파악되는데, 그 중 재정적 지원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용자금의 지급을 중심으로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 건축위원회 또는 한옥위원회 등의 조사·심의 및 의결을 거치거나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3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는 한옥건축 등의 지원에 대한 신청 권한을 등록한옥 또는 등록예정한옥의 소유자로 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신청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의 여부와 규모를 조례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지자체가 지원결정에 있어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한옥건축양식 지원**

각 조례는 시·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 보급을 위해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①시·도내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등의 실내외 공간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조성하는 사업, ②한옥이 아닌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하는 사업, ③그 밖에 시·도지사가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다.

- **한옥매수**

한옥의 보존·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우수건축자산, 전통한옥,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등을 매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16곳 광역지자체 중 3곳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의 조례에 명기되어 있다.

- **전문위원회**

시·도지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이는 16곳 광역지자체 중 4곳인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 따라 전문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대구광역시)’, ‘한옥분야 전문위원회(광주광역시)’, ‘한옥위원회(전라남도)’로 그 용어를 표기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한옥지원 조례 현황(종합)

지역	건축 ³⁶⁾					개보수		용자 지원	세제 김면	기반시설 지원		비고	
	신축 37)	증축 38)	개축 39)	재축 40)	이전 41)	리모 델링 42)	한옥 수선 43)			한옥 마을 조성	기존 한옥 마을		
서울	8천 보조 (한옥보전구역 외)					6천보조, 2천융자		2천 보조, 3천융자	★ 4천 융자			★ 4천 융자	
	12천 보조 (한옥보전구역 내)					9천보조, 3천융자							
	2천 융자 (한옥보전구역 외)					4천융자		1천 융자					
	3천 융자 (한옥보전구역 내)					6천융자							
20년						20년	5년	20년	-	-	-		
부산							-	-	-	-	-		
인천	4천	4천	4천	4천	-	4천	2천	-	-	6천	-		
	20년	20년	20년	20년	-	20년	5년	-	-	20년	-		
대구**	5천~ 3천	5천~ 3천	5천~ 3천	5천~ 3천	5천~ 3천	4천~ 2천	1천	-	-	-	-	지원 한옥 용도 제한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7년	-	-	-	-		
광주	★ 4천	★ 2천	★ 2천	★ 2천	★ 2천	★ 2천	★ 1천	-	-	4천	-	지원 한옥 용도 제한	
대전	3천	2천	2천	2천	2천	2천	1천	-	-	4천	-		
	10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	-	5년	-		
세종	3천	3천	3천	3천	-	3천	1천	-	-	3천	-		
	10년	5년	5년	5년	-	5년	5년	-	-	5년	-		
경기	2천	2천	2천	2천	2천)	2천	1천	-	-	2천	-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20년	5년	-	-	20년	-		
강원	-	-	-	-	-	-	-	☆	-	-	-		
충북	2천	-	2천	-	-	-	-	☆	-	2천	-		
	10년	-	5년	-	-	-	-	-	-	5년	-		

지역	건축 ³⁶⁾					개보수		융자 지원	세제 감면	기반시설 지원		비고
	신축 37)	증축 38)	개축 39)	재축 40)	이전 41)	리모 델링 42)	한옥 수선 43)			한옥 마을 조성	기존 한옥 마을	
충남	6천	4천	6천	6천	-	-	4천	☆	-	-	-	
	10년	5년	5년	5년	-	-	5년	-	-	5년	-	
전북	5천	3천	3천	3천	-	3천	1천	-	-	-	-	
	20년	20년	20년	20년	-	20년	5년	-	-	20년	-	
전남***	1천5백 보조, 2억용자	1천5백 보조, 2억용자	1천5백 보조,	1천5백 보조,	1천5백 보조,	1천5백 보조, 1억용자	전통한옥의 경우, 1억용자	-	1억5천 보조	-	-	
경북	4천							☆	-	-	-	
경남	5천 (진흥 구역내)	3천	5천 (진흥 구역내)	3천	2천	3천 (외관 변경)	2천	-	-	3천	-	
	20년	5년	20년	5년	5년	5년	5년	-	-	20년	-	
제주												-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세부내용을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한 경우는 해당
셀만 표시하였음

☆ 농촌주택개량사업, ★ 한옥건축양식

* 전면수선 및 신축 보조금의 경우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지원

** 대상 한옥이 한옥보호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보조금 금액 차이 발생

*** 한옥구역 내 건축 시에는 보조금 1천5백, 융자금 2억을 지원하나 한옥구역 외 한옥의 경우는 2억 융자금만을 지원

36) 건축법 제2조(정의)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7)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준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멀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들(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들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멀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한옥 지원

- 그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한옥 지원은 재정적 지원에 치중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과 융자금의 지급을 중심으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도의 건축위원회 또는 한옥위원회 등의 조사·심의 및 의결을 거치거나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지원 한옥 도시건축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재정적 지원제도는 원동력을 상실하였으며, 중장기적 차원에서 기술적 지원으로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 16곳 광역지자체 중 10곳은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 주기를 설정하고 있음

광역지자체 16곳 중 10곳은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 주기를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이다.

신축과 수선의 경우, 비교적 지원주기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한옥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 그리고 한옥마을 기반시설 지원의 경우는 5년에서 20년으로 지자체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 (신축) 10~20년
- (수선) 5~7년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리모델링) 5~20년
- (한옥마을 기반시설) 5~20년

건축 및 개보수 방식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주기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

42) 건축법 제2조(정의)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3) 건축법 제2조(정의)의 "대수선"과 부분수선을 포함하였다.

건축법 제2조(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 및 수선 외 항목의 지원구분이 모호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유사 개념 존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한옥이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다양하게 지칭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한옥밀집지역’, 대구광역시의 ‘한옥보호지역’, 전라남도의 ‘한옥구역’ 등 유사한 개념들이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43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15조(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의 지정 등)

- ① 시장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2. 24.] [대구광역시조례 제5388호, 2019. 12. 24., 제정]

제13조(한옥보호지역의 지정 등)

- ① 시장은 한옥의 보호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한옥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한옥밀집지역
 2. 한옥구조로 주택단지 또는 민박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인 사업대상지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
 3.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한옥과 인접한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보호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비롯한 시장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시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한옥보호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변경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고시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8.] [전라남도조례 제5281호, 2021. 4. 8.,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제23조의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이하 “한옥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 6.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 9. “한옥구역”이란 제5호의 한옥마을과 제6호의 한옥보존시범마을, 법 제17조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별 한옥건축 지원에 대한 차별점 존재

한옥건축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수선소요기간 동안 지원대상자가 서울시 공공건축자산을 1년 내에 범위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사용을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붕누수, 벽체보강, 미장보수, 목재부식 등 한옥의 소규모 수선을 별도로 지원가능하며, 충남·충북의 경우는 한옥마을에 대해 보조금과 응자금을 중복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는 한옥 건축 지원대상의 용도를 단독주택, 균린생활시설⁴⁴⁾,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44) 게임 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 기타

•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센터

서울특별시장은 한옥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 현장지원을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⁴⁵⁾. 센터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개·보수 상담, 소규모 수선 비용지원, 점검 보수, 다양한 교육, 기술연구, 한옥 등 건축자산 박람회 등 현장에서의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옥 119 –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모든 한옥(미등록 한옥의 경우 등록절차와 동시 진행)
- (지원내용) 1년 1회, 350만원 이내 응급 수선 및 노후화 개선 직접 공사
- (지원범위)
 - 소규모 응급 수선(지붕누수, 목구조 파손, 한식창호 및 벽체 파손 등)
 - 한식미장의 노후화로 균열, 배부름, 박락, 탈락이 발생한 경우
 - 지붕의 노후화로 일부분에 심한 기와 변형이 발생한 경우
 - 벽체의 노후화로 누수, 결로,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 흰개미의 흔적 등 현장확인 후 연1회 간이설치용 약제 지원 등

출처: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 <https://hanok.seoul.go.kr/front/kor/life/life119.do>(검색일: 2021.08.09.)

시장은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하고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청장, 한옥장인·전문가 및 관련기관(국가한옥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서울한옥지원센터의 주요프로그램인 ‘한옥 119’는 서울시 내 모든 한옥에 대해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점검은 지붕누수, 목구조 파손, 가옥 노후화, 흰개미 피해 발생 시에 실시하며, 컨설팅은 한옥의 개보수 및 신축, 유지관리, 지원제도 등에 대해 시행한다. 출동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45)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의 설치 및 건축자산의 진흥)

• 대구광역시 한옥보호지역

대구광역시장은 한옥의 보호 및 진흥을 위해 ①한옥밀집지역, ②한옥구조로 주택단지 또는 민박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인 사업대상지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 ③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한옥과 인접한 지역, ④그 밖에 시장이 한옥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한옥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정된 한옥보호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비롯한 시장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대구광역시장에게 한옥보호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변경 및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구광역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한옥보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고시는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전라남도 한옥발전기금

전라남도 도지사는 한옥 건축과 한옥구역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건축, 전통한옥 개보수,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사업에 기술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⁴⁶⁾ 이에 따라, 도지사는 ‘한옥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전라남도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도지사는 전라남도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한옥 업무 담당 국장)과 기금출납원(한옥 업무 담당 팀장)의 회계관직을 둔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기금은

46)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 : 보조사업의 한도액은 ‘한옥 건축’의 경우, 한옥구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있어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천6백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융자금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옥구역 외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있어서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2억 원까지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전통한옥 개보수’에 있어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억 원까지 융자금으로 지원 가능하며,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억5천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함.. 그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하고⁴⁷⁾,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⁴⁸⁾. 기금은 한옥건축 등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및 응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사용하고⁴⁹⁾,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의 응자를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도지사에게 응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응자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응자금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응자기간,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역시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 응자금의 대출·상환관리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응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 운용상황에 대해 매 분기 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금융기관의 장에게 기금 운용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계획에 있어,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0일까지 총괄관리관⁵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조성·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48)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49)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름

50)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관련 조례

◆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 관련 조례의 구성

- 정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주⁵¹⁾를 말하며,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등록의 유효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할 의향을 갖고 도지사·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한옥을 일컫는다.

‘한옥수선 등’이란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또는 한옥을 수선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

‘한옥건축 등’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⁵²⁾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한옥의 외관’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의미한다.

‘한옥마을’은 10호 이상 한옥이 집단으로 준치된 지역이나 한옥을 원형대로 또는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도지사 또는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하며, ‘한옥보존시범마을’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준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 또는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51) 「건축법」 제2조제12호

52) 「건축법」 제2조제8호

• 위원회

시장 및 군수는 한옥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한옥의 보존에 관한 조사·심의·자문을 위하여 한옥위원회 또는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예산 결정에 관한 사항, 한옥촉진 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한옥 설계 및 시공 등에 관한 사항, 한옥홍보관 등 공공 한옥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한옥의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한다.

60개의 조례 중 34개 조례에서 별도의 한옥위원회 또는 한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24개 조례에서는 기존의 지방건축위원회 등이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옥등록제 시행

한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시장·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장 및 군수는 신청을 받은 때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 확인과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비치된 대장에는 등록 한옥의 등록이 결정된 때, 신축 등에 따라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있어 그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하며, 한옥 건축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때에는 최종 지원금을 지급한 날을 기산일(起算日)로 한다. 유효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 받은 사실과 등록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새

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한옥 소유자 등은 등록 한옥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해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한옥의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 시장 및 군수는 등록 한옥이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멸실된 경우 또는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수선한 경우에 있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 한옥수선비용 지원 등

시장 및 군수는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한옥수선비용의 지원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옥 수선 등의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최대 1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그 밖의 한옥의 외관 및 내부의 수선 등의 경우 같은 범위에서 지역별로 최대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전자의 경우 15년, 후자의 경우 5년이 지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 관련 조례의 구성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정의	위원회 조직	한옥 등록제 시행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세제 감면	한옥 매수	기금 설치	권한 위임	실제 작동 여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	●	●	●	●	●	●	●	●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	●	●	●	●	●			
	수원시	●	●	●	●	●	●			●
경기도	남양주시	●		●	●	●	●			●
	평택시	●		●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정의	위원회 조직	한국 등록제 시행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세제 감면	한옥 매수	기금 설치	권한 위임	실제 작동 여부
포천시		●		●	●		●			
김포시		●		●	●					●
광주시		●		●	●		●			●
광주시 남한산성		●	●							
강원도	춘천시	●		●	●					
	평창군	●	●	●			●			
청주시		●	●	●	●	●	●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단양군 한옥마을	●	●	●	●					
	천안시	●	●	●	●		●			
	아산시	●		●	●					
충청남도	서산시	●		●	●		●			
	홍성군	●	●	●	●		●			●
	예산군	●		●	●		●			
전라북도	전주시 ⁵³⁾	●		●	●					●
	전주시 ⁵⁴⁾	●	●	●	●	●	●			●
	완주군	●	●	●	●					
	임실군	●		●	●					

53) 전주시 한국건축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5.]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650호, 2020. 5. 15., 제정]

54) 전주시 한국보전 지원 조례 [시행 2015. 12. 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48호, 2015. 12. 30., 일부개정]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정의	위원회 조직	한옥 등록제 시행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세제 감면	한옥 매수	기금 설치	권한 위임	실제 작동 여부
전라남도	목포시	●	●	●	●					
	여수시	●			●					
	순천시	●	●	●	●					
	나주시	●	●	●	●				●	
	광양시	●	●	●						
	담양군	●		●						
	곡성군	●	●	●	●					
	구례군	●		●	●					
	고흥군	●			●					
	보성군	●	●	●						
	화순군	●	●	●					●	
	장흥군	●		●						
	강진군	●	●	●						
	해남군	●	●	●	●				●	
	영암군	●	●	●	●					
	무안군	●	●	●	●					
	함평군	●	●	●						
	영광군	●		●	●					
	장성군	●	●						●	
	완도군	●	●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정의 위원회 조직	한옥 등록제 시행	한옥 수선 비용 지원	세제 감면	한옥 매수	기금 설치	권한 위임	실제 작동 여부
경상북도	진도군	●	●	●	●				
	신안군	●	●	●	●				
	포항시	●	●	●	●	●			●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	●	●	●	●			
	김천시	●	●						●
	안동시	●		●	●				●
	의성군 한옥마을	●	●	●	●				●
	청송군	●		●	●				
	고령군	●	●						●
	성주군	●		●	●				●
	칠곡군	●		●	●				
	예천군	●		●	●	●			●
경상남도	밀양시	●			●				
	거제시	●		●	●				
	창녕군	●	●	●	●	●			
	하동군	●	●	●	●				
거창군	거창군	●		●	●				

주: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기초지자체 단위의 한옥 관련 조례 미운용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한옥 지원

- 기초지방자치단체별 한옥건축 지원주기에는 차별점 존재

한옥 관련 조례를 운용 중인 6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조례를 살펴본 결과, 지원금액과 지원주기는 건축 및 개보수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한옥의 건축과 외관 및 내부 수선의 경우 각각 10년에서 20년, 2년에서 10년으로 비교적 지원주기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대수선의 경우는 5년에서 20년으로 자차체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 (신축) 10~20년
- (외관 및 내부수선) 2~10년
- (대수선) 5~20년

또한 6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체조례 중 12건은 한옥건축물 지원 주기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 남한산성, 평창군, 강진군, 완도군, 신안군, 김천시, 고령군, 창녕군 8 건의 관련조례에서 한옥건축물에 대한 지원주기가 부재하며,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고흥군 4곳의 관련조례에서는 보조금 중복지급 가능여부를 조건에 따라 항목으로 명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주기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 한옥건축 지원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자차체도 상당수

대부분의 자차체가 한옥건축 또는 수선에 대한 지원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지원한도 및 지원 주기를 마련하고 있으나, 40곳의 기초지자체에서 최근 5년간의 관련 추진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

서울 성북구, 수원시, 남양주시, 김포시, 광주시, 청주시, 전주시(2건), 나주시, 화순군, 해남군, 장성군,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성주군, 의성군 한옥마을, 고령군, 예천군, 홍성군의 경우 최근 5년 간 한옥건축 지원 사례가 존재하므로 실제 작동 중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나머지 40곳의 경우 최근 5년간의 관련 자료가 파악되지 않아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옥 지원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한옥 관련 조례 현황

2021

한옥 정책·제도·사업
안내서



종로구 부암동 전통문화시설(무계원, 2012)

담당부서: 종로구청 문화과 / 종로문화재단

지원액: 2.0억원

사진: 오상민



04

중앙정부 한옥 관련 사업

1. 국토교통부
2. 문화체육관광부
3. 농림축산식품부
4. 농촌진흥청
5. 문화재청
6. 산림청
7. 행정안전부

1. 국토교통부

◆ 관련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사업현황

국토교통부 한옥관련 예산 지원 현황

사업명	소관부서	사업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한옥도시건축 지원사업	-	중단	3억	1.5억	-	-	-	-
한옥기술개발 R&D사업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09년~	0.63억 ⁵⁵⁾	-	-	-	114억 ⁵⁶⁾	1.5억 ⁵⁷⁾
한옥공모전 및 캠프	건축문화경관과	2011년~	1.8억	1.8억	1.8억	1.8억	1.8억	1.8억
한옥전문인력 양성사업	건축문화경관과	2019년~	-	-	-	4.25억	4.25억	4.8억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기획단	2017년~	-	-	1개소	2개소	-	-

55) 한옥자재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공간·장경간 한옥기술개발(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56) 10m급 대공간 한옥 설계, 시공 기술 개발

1)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 소관부서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옥기술개발연구단

◆ 추진배경 및 목적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진 전통한옥이 좁고 불편하며 춥고 비싼 주거형태로 인식됨에 따라 한옥의 멋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의 거주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산·학·연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한옥에 관한 생산, 설계, 성능, DB 등 융합 기술개발이 시행되었다.

◆ 1단계 추진성과

- (연구기간) 2009.12.21 ~ 2013.09.20 (3년 9개월)
- (총연구개발비) 총 178억원 (정부출연금 133억원, 민간 45억원)
- (연구목표) 전통한옥의 브랜드 가치를 계승하고 현대적 거주 성능이 확보된 저렴한(전통한옥의 60% 수준) 대중한옥 개발

◆ 2단계 추진성과

- (연구기간) 2013.12.26 ~ 2016.10.31 (2년 10개월)
- (총연구개발비) 총 244.2억원 (정부출연금 134.1억원, 민간 110.1억원)

57) 에너지 절약형 한옥 모델개발 기획(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 (연구목표) 기개발된 기술 및 한옥 R&D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신한옥 모델의 보급·확산을 위한 신한옥 마을, 기술전시관 및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최적화 모델개발

“전통 한옥공사비 대비 40% 절감”



한옥기술개발 R&D 사업 대표성과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과학기술진흥원 한옥기술개발연구단. (2016). 한옥기술개발 연구성과자료집. 14쪽 재구성

◆ 3단계 추진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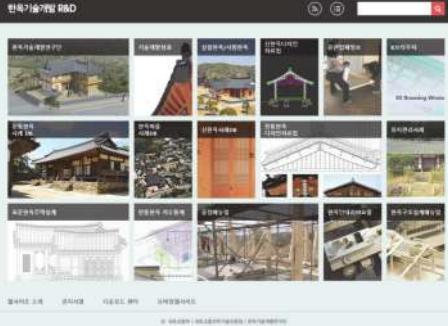
- (연구기간) 2017.04.17 ~ 2021.12.31 (4년 8개월)
- (총연구개발비) 총 161.1억원 (정부출연금 114억원, 민간 47.1억원)
- (연구목표) 10m급 대공간 한옥설계·시공기술개발(신한옥 보급확산과 대공간 한옥기술 개발 및 성능고도화)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을 통해 건립된 서울 정수초등학교

사진: 동양미래대학교 장필구

한옥기술개발 R&D



한국기술개발 R&D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을 통해 건립된 서울 정수초등학교는 전통적인 한옥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건축물입니다.

한옥기술개발 R&D



한국기술개발 R&D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한옥기술개발 R&D 사업을 통해 건립된 서울 정수초등학교는 전통적인 한옥 디자인과 현대적인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건축물입니다.

한옥기술개발R&D 사이트

출처: 한옥기술개발R&D 사이트, <http://hanokkorea.auric.kr:8088/main/rnd/main/main.do>

2)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추진배경 및 목적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하여, 당시 중점 국정과제였던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의 세부사업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에는 한옥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실시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한옥 시공 중간관리자 과정을 신설하여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설계 및 시공 중간 관리자 2개 교육과정은 2014년까지 지속되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6.4. 시행)이 제정되면서, 사업의 법적 시행근거가 마련되었다.

◆ 추진현황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정부 기조에 따라 2015년부터 사업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된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다. 약 4년간의 공백기를 가진 끝에,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2019년에 「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및 「시공관리자 과정」으로 구성된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정식으로 재개되었으며, 현재(2021년 기준)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021년 까지 7년간('11~'14, '19~'21), 대학, 학·협회, 교육원,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33.88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1,11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한옥 전문인력 양성과정 추진 개요

구분	2011년		2012~2013년		2014년	
	교육과정	설계과정(신설)	설계과정	시공과정(신설)	설계과정	시공과정
사업비	3억원 (각 1.5억원)	5.2억원 (각 1.3억원)	5천만 원	5.2억원 (각 1.3억원)	1억 원 (각 5천만 원)	
교육기관	2개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4개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경상대학교, 대한건축사협회	1개소	4개소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한건축사협회	2개소	한옥문화원, 문화재기능인협회
선발인원	기관별 30~40인	기관별 45명	내외 25명	내외	기관별 45명	내외 25명
기간	6개월, 192시간 이상	6개월, 208시간 이상	3개월, 192시간 이상	6개월, 208시간 이상	3개월, 192시간 이상	
수료인원	92명	180명(2012), 161명(2013)	28명(2012), 28명(2013)	179명	28명	

*설계과정 대상: 건축사, 건축사시험 자격자, 건축분야 기술사 등(기관 공동 적용 사항)

**시공과정 대상: 한옥교육(3개월이상)이수자, 건축분야 (산업)기사, 기능사 (기관 공동 적용 사항)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육과정	설계과정	시공과정	설계과정	시공과정	설계과정	시공과정
사업비	3.6억원 (각 1.2억원)	6.5천만 원	3.48억원 (각 1.16억원)	7.5천만 원	4.8억원 (각 1.2억원)	-	
교육기관	3개소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한건축사협회	1개소 한옥문화원	3개소 전북대학교, 명지대학교, 대한건축사협회	1개소 한옥문화원	4개소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명지대학교, 대한건축사협회	-	(미선정)
선발인원	기관별 45명 내외	30명	내외	기관별 40명 내외	30명	내외	-
기간	6개월, 208시간 이상	3개월, 144시간 이상	6개월, 208시간 이상	3개월, 144시간 이상	6개월, 208시간 이상	-	
수료인원	111명	34명	112명	26명	131명	-	

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추진배경 및 목적

한옥 건축 활성화 등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옥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옥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대한민국 한옥공모전」(11~) 및 「대학생 한옥캠프」(12~)를 추진 중에 있다.



역대 공모전 포스터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접수 작품수 현황

구분	준공부문	계획부문	사진부문	영상부문	공모주제
2011	18	152	-		Neo-Hanok Vision : 진화하는 한옥
2012	6	104	316		(계획) 함께사는한옥, (사진) 한옥의 일상
2013	9	129	488		한옥의 가능성
2014	4	68	790		누구나 누리는 한옥(공공건축)
2015	10	57	506	-	상상 그 이상의 한옥
2016	9	53	692		도심 속 한옥
2017	17	53	595		한옥의 현대화
2018	12	28	193		한옥, 길을 만나다
2019	12	89	876		한옥,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2020	16	66	533	11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
2021	12*	44	226	29	오늘의 경관을 품어 내일의 경관이 되는 한옥 만들기

*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 신설

◆ 추진현황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매년 운영위원회의 공모주제 기획에 따라 다양한 부문의 한옥작품을 공모한다. 2021년에는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을 장려하고 우수한옥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준공부문에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을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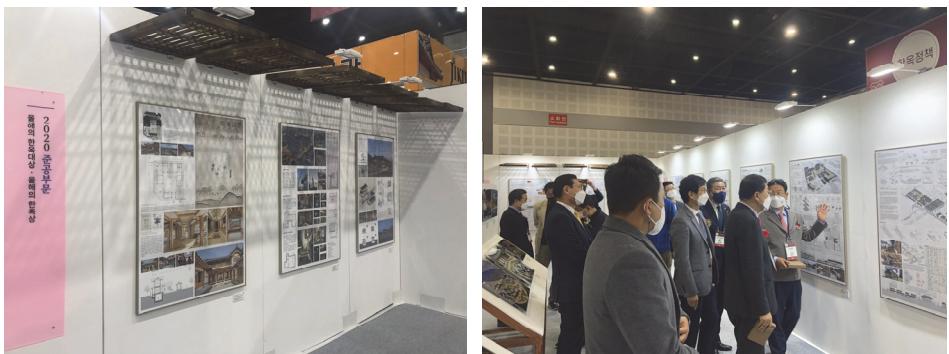
준공부문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건축물에 한하여 응모 가능하며, 건축물 대장상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가 제출할 수 있다. ‘올해의 한옥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상으로 상장 및 상패,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이 수여되며, ‘올해의 한옥공공건축물상’은 건축공간연구원장상으로 상장 및 상패,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이 수여된다.

수상작품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누리집(<http://competition.hanokdb.kr/>)에 공유되며, 전시회 개최를 통해 대국민 대상의 홍보를 꾀할 수 있다.



2015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올해의 한옥대상 수상작 “청운 문학도서관”

사진: 김가람



2020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작품전시

주: 2021 경주한옥문화박람회

4)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추진배경 및 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앙정부 선정사업과 시·도 선정사업으로 구분되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지역 특화 재생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역사·문화·건축·경관·상업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부처 협업모델⁵⁸⁾을 선정해 추진된다.

지역 내 한옥·근대건축물 등의 건축자산 연계를 통한 쇠퇴지역 재생사업으로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추진현황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은 지역 특화재생사업의 가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에 이점이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건축자산 연계형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는 2018년 1개소⁵⁹⁾, 2019년 2개소⁶⁰⁾로 파악된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건축자산 연계 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가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완료한 지역이라면 지역 내 건축자산과 경관을 활용한 사업 신청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58) 대학타운, 건축·경관, 건축자산, 역사·문화, 지역상권, 여성친화, 농촌지역특화 등

59) 대구 중구 중심시가지형-북성로(2019~2023년), 일반근린형-동산동(2019년~2022년)

60) 전북 군산 중심시가지형-해신동(2020~2024년), 전북 익산 일반근린형-인화동(2020년~2023년)

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가점평가 기준

- (건축자산 특화 요소의 적정성, 2점) 구역 내 건축자산 현황 파악(예정) 여부, 건축자산연계사업에 대한 적정범위의 사업예산 구성 여부, 건축자산 현황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 특화된 공간 개선계획(마스터플랜) 수립 계획,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등 건축자산의 지속적 활용·관리 계획을 검토해 평가
- (목표 및 구역설정의 적정성, 2점) 지역 및 건축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핵심 목표 설정의 적정성, 건축자산진흥구역(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공간적·기능적 연계성을 검토해 평가
- (전문가 참여체계의 적정성, 1점)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의 사업기획 및 시공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을 갖는 전문가 참여체계 구축 또는 계획, 건축경관 특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문가 주도·행정지원·주민참여 협업체계 구축 또는 검토를 통해 평가

◆ 추진사례

•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대구광역시 중구의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의 비전과 미션은 <도심 역사문화 자산 활용과 지역경제 생태계 재구축을 통한 ‘대구의 중심성 회복’>이다.

건축자산 연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 (사업명) 다시 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 (사업기간) 2019~2023(5년)
- (사업유형) 중심시가지형, 건축자산연계형
- (대상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21번지 일원
- (사업면적) 224,572 m²



출처: 대구중구 북성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https://jgursc.com/bbs/content.php?co_id=bs_project(검색일: 2021.11.20.)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대구 읍성 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촌동 건축자산진흥 구역의 일부와 대상지를 같이한다.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만으로는 투입되기 어려운 국가예산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통해 확보하여 건축자산을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건축기반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구중구 북성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방향

출처: 대구중구 북성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https://jgursc.com/bbs/content.php?co_id=bs_vision(검색일: 2021.11.20.)

건축자산 관련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지역에 산재한 건축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근대 건축자산을 리노베이션하여 창업공간, 인큐베이팅 공간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흩어진 건축자산들을 연계한 가로조성 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구중구 북성로 도시재생뉴딜 건축문화유산 관련 세부내용

구분	내용				
목표	풍경의 연장으로서 건축문화유산 가치 제고				
현황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중심기능이 약화 - 개발에 의해 우수 건축자산이 훼손되거나 빈 공간으로 방치 - 오랫동안 형성된 고유한 경관이 있으나 간선도로에 의해 구역 단절 - 보행과 차도가 혼용되어 있으며 야간에 골목길이 어두워 슬럼화 가속 - 리노베이션으로 청년 창업 시도가 많으나 지속성이 떨어지고 교류가 없음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체를 통합적 관리할 수 있는 앵커시설(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구축 - 근대건축물 재생을 통해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상권 활성화 기여 - 청년창업 지원과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창업기회 증대 - 건축자산들을 연결할 가로조성사업으로 특색있는 경관 조성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자산 통합관리센터 조성 나. 건축자산 리노베이션 지원 다. 집수리센터 기반구축 라. 건축자산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도출	<table border="0"> <tr> <td>청년창업 클러스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 나. 북성로 청년창업네트워크 </td></tr> <tr> <td>역사생활가로</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역사생활가로 경관조성 나. 안전마을 만들기 </td></tr> </table>	청년창업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 나. 북성로 청년창업네트워크 	역사생활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역사생활가로 경관조성 나. 안전마을 만들기
청년창업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북성로 청년창업클러스터 조성 나. 북성로 청년창업네트워크 				
역사생활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역사생활가로 경관조성 나. 안전마을 만들기 				

출처: 대구광역시 중구 북성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jgursc.com/bbs/content.php?co_id=bs_project11(검색일: 2021.11.30.)

또한, 문화재청의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1970년 이전에 축조된 건축자산의 DB화를 추진하고 2021년 5월에는 대구 3D 지도 홈페이지에 역사문화자산 정보를 탑재하여 일반 시민들도 손쉽게 자산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 문화체육관광부

◆ 관련 법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호텔업의 종류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사. **한옥체험업** : 한옥⁶¹⁾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사업현황

문화체육관광부 한옥관련 예산 지원 현황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2004년~ 매년	5억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5억 62)	4억 63)	4억 64)	9억 -	9억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센터	2016년~ 현재	0.8억 62)	4.2억 63)	3.5억 64)	-	-	3.3억 65)
전통한옥 활성화 홍보마케팅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	2020년~ 현재	-	-	-	-	1억8천	2억2천

6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1)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⁶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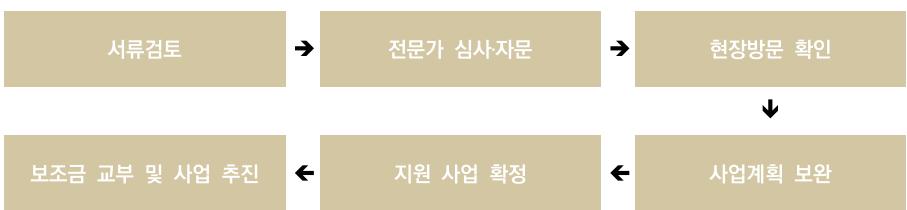
◆ 소관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추진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 전통문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고자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⁶⁷⁾’을 시행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을 대상으로 한다.

◆ 선정 절차



62)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평가기준 개발 용역

63)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관련 신규 인증분야 평가지표 개발(7천9백), 한국관광품질인증제 인증심사 운영시스템 구축 (2억6천9백),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관련 교육자료 개발 및 e-러닝과정 운영(7천)

64)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관련 인증업소 예약관리 지원 및 판촉 프로모션 추진(1억1천5백),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컨설팅 용역(2억4천)

65) 2022 한국관광 품질인증 온라인채널 운영(3억3천)

66) 문화체육관광부. (2020). '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계획

67) 2019년까지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이었으나 2020년부터 사업명 변경

◆ 선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라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별 한옥
- 한옥체험업 사업자별로 1개소 지원 원칙, 단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한옥 또는 재단(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한옥은 개별 한옥별로 지원 가능
- 지역의 사회적 기업 또는 문화·예술기관 등이 한옥체험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마을단위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타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자체를 통하여 '21년 한옥체험업 시설 개보수 지원받는 사업자는 '전통한옥 브랜드화' 지원 불가
- 기존에 지원받은 적 있는 업체에서 재지원 요청 시, 기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등) 제출
- 3년 연속 동일 가옥 사업 지원 불가

◆ 지원기준

구분	기준
한옥체험업 운영 개별 가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소 당 최대 국비 3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한옥체험업 밀집 지역 및 마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소 당 최대 국비 60백만원 (국비 40%, 지방비 60%)

◆ 평가항목

- 한옥체험업 지정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합목적성

- 지방비,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 한옥상태 : 가옥훼손이 심각하여 당해 예산지원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시설 제외
- 한옥체험업 운영자 실거주 여부
- 숙박시설 활용여건 : 현재 숙박시설로 활용중이거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개별 한옥
- 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가능 여부
- 사업추진 의지 : 민간, 지자체 등 사업주체 추진의지 및 관광 마인드, 관광객 편의 제공 가능 여부
- 1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우선 지원
- 마을 단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 달성을 가능할 경우 우선 지원
- 재지원 요청 시, 관광객 이용현황, 수입·지출 등 관리운영 실적 검토

◆ 추진사례



전남 보성 한국천연염색 숨

주: 2020년-2021년 전통한옥 브랜드화 공모사업 선정, 2020년 한국관광공사 한옥품질 인증
사진: 사단법인 한국천연염색 숨

2)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 소관부서

한국관광공사 관광인증센터

◆ 추진배경 및 목적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광분야의 인증제도로 숙박, 쇼핑 등 관광점점 대상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및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⁶⁸⁾.

◆ 인증대상

- 숙박업(일반·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⁶⁹⁾으로 지정 또는 등록한 자

68) 한국관광 품질인증 공식 홈페이지, <https://koreaquality.visitkorea.or.kr/quality/introduction/introduction.kto>(검색일: 2021.12.10.)

69)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필요서류

-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업) 지정증 또는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본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해리티지부문) 문화재등록증 또는 70년 이상 고택증명서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한옥체험업 신청서류

업종	구분	서류명
한옥체험업	필수	관광편의시설업(한옥체험업) 지정증 또는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본 사본(생년월일만 표기)
	선택	건축물대장 사본
		문화재등록증 또는 70년 이상 고택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리티지 신청에 한함)
서비스교육 이수증 사본	선택	영업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 심사과정



*5개 업종: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일반음식점업

◆ 인증기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인증기준

인증대상	기준
숙박업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스탠더드] 총점의 70%이상 [프리미어] 총점의 90%이상
숙박	한옥체험업 일반 헤리티지 총점의 70%이상 게스트하우스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홈스테이형 총점의 80%이상 *2차 현장평가 미실시
쇼핑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중대형 소형 총점의 70%이상

◆ 평가지표70

평가지표	배점 세부내용
건축물 및 이용시설의 적법성 * 필수 : 건축법상위반(건축물대장 상 미등재(무허가, 미승인))건축물이거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상 미지정 건축물 등 운영시 인증 불가	O/X 무허가(건축허가 없이 신축 또는 증축), 미승인(허가도면과 상이한 건축)
한옥의 전통적인 외관(구조) * 필수 :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법적요건)	10 한옥의 한식지붕틀, 주요 구조부(기단·주춧돌), 서까래에 대한 외관 평가

평가지표	배점 세부내용
한옥의 전통적인 외관(지붕재료)	10 한식기와 사용 등에 따른 평가
한옥의 전통적인 외관(벽체 및 창호)	10 벽체 및 창호의 전통양식 반영 및 한옥과의 조화에 따른 평가
한옥의 전통적인 외관(대청마루)	10 한옥의 대청마루의 유무 및 관리상태에 따른 평가
한옥의 전통적인 외관(대문 및 상호 표시 등)	10 전통양식 반영 및 한옥과의 조화에 따른 평가
옥외조경시설(마당 및 정원)	3 한국 고유의 전통적 외부공간인 마당(정원)의 위치 및 규모의 적정성
옥외조경시설(식재 및 조경시설)	2 마당(정원)을 중심으로 한옥과 조화로운 식재 여부 및 화계, 연못, 정자 등 조경시설 조성 여부
옥외조경시설(담장)	2 담장이 있는 경우, 사고석담장, 와편담장, 토담 등 한옥과 조화로운 담장 조성 여부 (담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옥외조경시설(차폐시설)	2 가스·전기 겹침기, 에어컨 실외기 등 한옥의 경관 저해요소의 차폐 여부

◆ 지원내용

- **(홍보마케팅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매출 증대
- **(운영관리 지원)** 안전·소방·위생·불법촬영 범죄예방 컨설팅 등
- **(서비스 강화 지원)** 온라인 서비스 교육 및 서비스 품질조사
- 인증 홍보물품 및 긴급물품지원(코로나 19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이용 및 우대금리 지원 외 다수

70) 한국관광공사. (2021). 한옥체험업 현장평가 평가지표에서 건물 및 시설부분 발췌

◆ 추진사례

대한민국 구석구석

지금은 잠시 멈춰야 할 때! 온선으로 즐겨봐요

검색

내부문

한국관광 품질인증[Korea Quality] 바로가기

#품질인증한옥

총 204 건

전체 | 업소 | 추천

얼음골한옥펜션&캠핑장[한국관광 품질인증/Kor... :
경남 밀양시
010-6563-3122
#경남추천숙소 #경남품질인증숙소 #밀양숙소 #밀양추천숙소 #삼명...]

한옥에서의 하루에랑 [한국관광 품질인증/Korea... :
경기 용인시
010-5897-7772
#경기추천숙소 #경기품질인증숙소 #대당이있는 #서울근교품질인증...]

남향재[한국관광 품질인증/Korea Quality] :
전남 영암군
061-471-3570
#KQ인증을받은 #객실내워카 가능 #캐스트하우스남한재한옥체험 #남...]

한옥에서[한국관광 품질인증/Korea Quality] :
전주 담양군
061-382-3832
#가족여행객은 #캐스트하우스고객한국에서 #고객한국에서 #고객...]

한옥에서의 하루에랑(미담전, 동심전) [한국관광... :
경기 용인시
#경기품질인증숙소 #대당이있는 #산책하기좋은곳 #서금근교품질인...]

초정궁 [한국관광 품질인증/Korea Quality] :
충북 청주시
043-270-7332
#2021대한민국연설여행캠페인 #가족과함께 #방역우수관찰지 #속박...]

라고재 서울 북촌 한옥호텔 [한국관광 품질인증/... :
서울 종로구
02-742-3410
#가족여행객은 #대중교통으로갈수있는 #서울품질인증숙소 #속박...]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한국관광품질인증연소
#품질인증숙소 #품질인증쇼핑
#품질인증콘텐츠
#여사가간은품질인증숙소
#안동품질인증숙소

상세정보 ^

#전체 #주차가능 #미엄서비스
#자전거대여가능 #앞모자대여가능
#식음료점장 #비비글장
#피트니스센터 #노래방
#공용사위실 #공용PC실
#사무나실 #제비나실
#스포츠시설 #랜드ша이어

편의정보 ^

#전체 #마목사설 #목조
#음시터 #애야전 #ITV
#PC #케이블방송 #인터넷
#냉장고 #세면도구 #소파
#취사용품 #네이버 #드라이기

한국관광 품질인증 한옥체험업 목록

출처: 대한민국구석구석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other/kq_list.do?otdid=456a84d1-84c4-11e8-8165-020027310001&moreTag=%ED%92%88%EC%A7%88%EC%9D%B8%EC%A6%9D%ED%95%9C%EC%98%A5%7C%7C\(검색일: 2021.11.15.\)](https://korean.visitkorea.or.kr/other/kq_list.do?otdid=456a84d1-84c4-11e8-8165-020027310001&moreTag=%ED%92%88%EC%A7%88%EC%9D%B8%EC%A6%9D%ED%95%9C%EC%98%A5%7C%7C(검색일: 2021.11.15.))

3) 전통한옥 활성화 홍보마케팅

◆ 소관부서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

◆ 추진배경 및 목적

전통한옥을 한국 고유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체험 및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홍보가 추진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다양한 SNS 활용을 통한 전통한옥 숙박체험 인지도의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외국인 대상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온라인 홍보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유튜브 체험형 영상, 인스타그램 우수 전통한옥 포스팅, 전통한옥 홍보 마이크로사이트 운영
- **(전통한옥 판촉지원 및 홍보물 제작)** 영세 전통한옥 유통 판로 지원, 포털, OTA, 클라우드 펀드 등 활용 영세 전통한옥 판촉 지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이용 매뉴얼 제작

3.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 법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0. “생활환경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 사업현황

농림축산식품부 한옥관련 예산 지원 현황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지역개발과	2010년~현재	5천억	5천억	5천 5백억	5천 5백억	5천 5백억	5천 5백억
농어촌민박사업	농촌산업과	1995년~현재	2억	2억	2억	2억	3억	1.5억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⁷¹⁾

◆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한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신규로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촌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1) 읍·면의 지역
-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⁷¹⁾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대상주택

연면적 150㎡이하

- 가.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150㎡)에 포함하지 않음
 - 바. 동일 필지 안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상가 등이 혼재되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 사.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대수선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에 한정하여 사업신청 가능
 - 아. 근로자를 위한 숙소 용도로 주택을 신축·개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제58조의2에 따른 「근로자 기숙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 상기 가.~아.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억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2) 농어촌 민박사업

◆ 소관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사업개요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제고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1995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다.

◆ 대상주택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 (주택 연면적 230m² 미만)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

출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VISIT JEJU 관광지 음식점 숙박 쇼핑 면세점 제주이야기 여행밀수정보 제주여행주천 나의 여행
[Redacted] 청자 치즈 국도 새뜰 카페
[Redacted] 제주국제공항
동박생이 ★★★★★
[Redacted]
기본정보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청장1길 88
전화번호: (+82) 010-2699-4191
홈페이지: [Redacted]

농어촌민박 사례 – 제주 동박생이

출처: 비짓제주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

https://www.visitjeju.net/kr/detail/view?contentsid=CONT_00000000050083&menuid=DOM_20000000010590#p6(검색일: 2021.11.14.)

4. 농촌진흥청

1)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설계도서⁷²⁾ 배포

◆ 소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사업개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촌의 정체성 회복 및 농촌 경관 보존을 위한 모델 제시를 위하여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우리 농촌에 어울리는 한국적 주택을 짓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2014)’을 소개하였다. 설계도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와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포해 귀농·귀촌인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은 생활양식과 규모,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5종의 유형⁷³⁾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평면도, 정면도, 부분상세도 등을 유형별로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며, 건축 형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별 조감도와 내부 투영도도 공개하고 있다.

7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4).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설계 도서. 국립농업과학원 단행본

73) 전통미 ‘—’자형, 전통미 ‘—’자 확장형, 전통미 ‘ㄱ’자형, 전통미 2층 ‘—’자형, 전통미 2층 ‘ㄱ’자형 등

○ 전통미 '—'자형

- 원주면 및 노부면의 난지거수를 위한 주택 모델
- 외서비 나비 있는 자-형의 설문이 배경가arden 농가주택에서 2.45m의 거울 시비간리를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닥 공간 팔랑도를 높인 모델

○ 전통미 2층 '—'자형

- 자녀가 가정 이상 있는 이수민을 위한 주택모델
- '옥송마을' 위해 창작한 자-형의 부모와의 세대 간 트리비버스를 지어 공간 분리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모델

○ 전통미 '—'자 확장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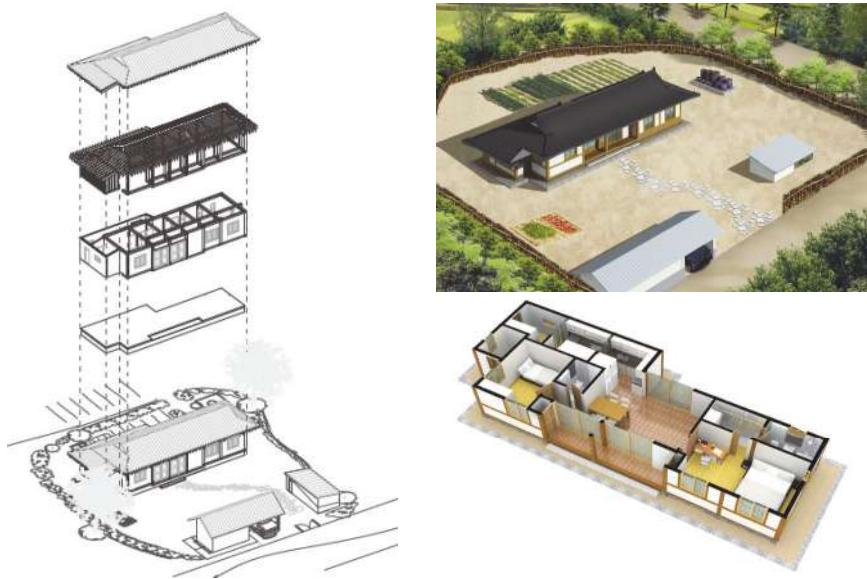
- 미주면 일부 혹은 노부면을 위한 주택모델
- 주거가 생산공간의 일부로 적용되는 농촌생활의 특성상 서비스로운 이미지를 발달하기 때문에 본래에 추가된 공간을 서비스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모델

○ 전통미 2층 'ㄱ'자형

- 미관자아가 있고, 일자마주 혹은 농촌정책을 준비하는 40~50대 부부
- 도시형 생활양식에 익숙한 이들에게 차세대를 위한 디자인 공간과 실제 농촌 생활을 통해 필요한 공간을 모색해 나아가기 들려면 모델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유형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4).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설계 도서. 6



전통미 '—'자 확장형 기본모델

출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2014). 전통미를 살린 농촌주택 모델 설계 도서. 108-110

5. 문화재청

◆ 관련 법률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현황

문화재청 한옥관련 예산 지원 현황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2015년~ 현재	112억	114억	36억	30억	50억	80억

1)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 소관부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대상지역

경주, 공주, 부여, 익산 4개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 주거 및 가로

◆ 사업개요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상 수립된 고도별 차별화된 여러 사업을 의미하며, 현재 예산의 제약 하에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 중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보존육성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으며 4개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고도(古都) 지정지구)에서 공통적으로 시행 중이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담장·옛길·역사자원 정비 등 고도 지정지구의 주거환경 및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통해 고도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지원내용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개축, 신축할 경우 또는 가로경관을 개선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 (주거환경 개선) 한옥(한옥양식)으로 신축·개축·재축·증축·수선 → 주민시행 시 발굴조사비(실비), 설계·공사비(2/3 범위, 최대 1억원) 지원

- (가로경관 개선) 보도, 소공원, 유적 보존지역, 담장, 대문, 간판, 가로변 건축물 외관 등 고도 역사문화환경 정비 → 주민시행 시 발굴조사비(설비), 설계·공사비(2/3 범위, 최대 3천만원) 지원

◆ 사업근거

고도(古都)로 지정된 경주·공주·부여·의산의 경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해당 시·군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고도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며 주민지원사업 중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옥 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시·군별로 차이⁷⁴⁾를 보이나 대체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옥	한옥건축양식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1억원	·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다. 한옥을 수선·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 추진절차



74) 경주시는 단독주택과 균린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구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 금액에 차이를 둔다.

◆ 주요 사례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사례 – 공주 금성동

출처: 문화재청. (2020).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추진현황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사례 – 익산 금마지구

사진: 연구진 직접 촬영

2)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 소관부서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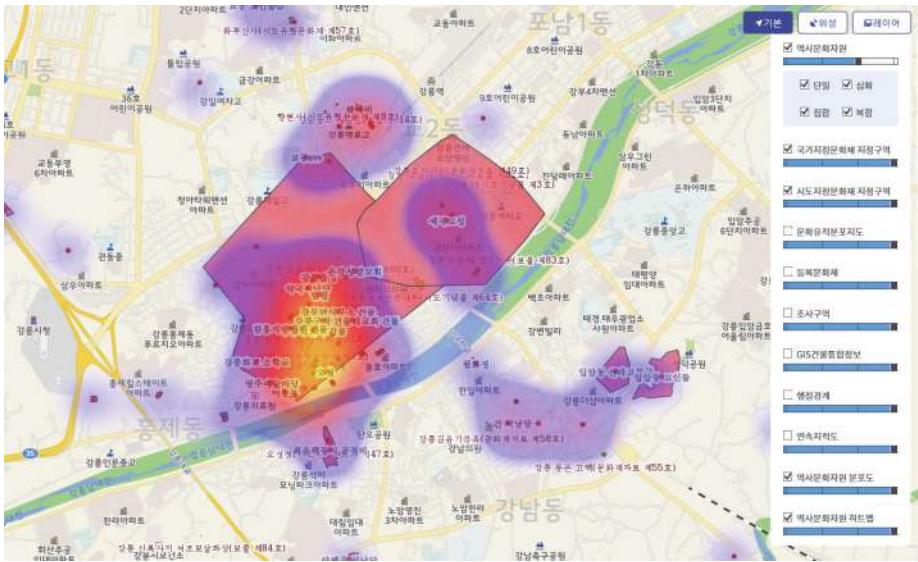
역사문화자원⁷⁵⁾ 전수조사 사업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관리 기반이 취약한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의 목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하여 5개년동안 2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수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가 완료되는데, 역사문화자원의 범주에는 가치가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종료 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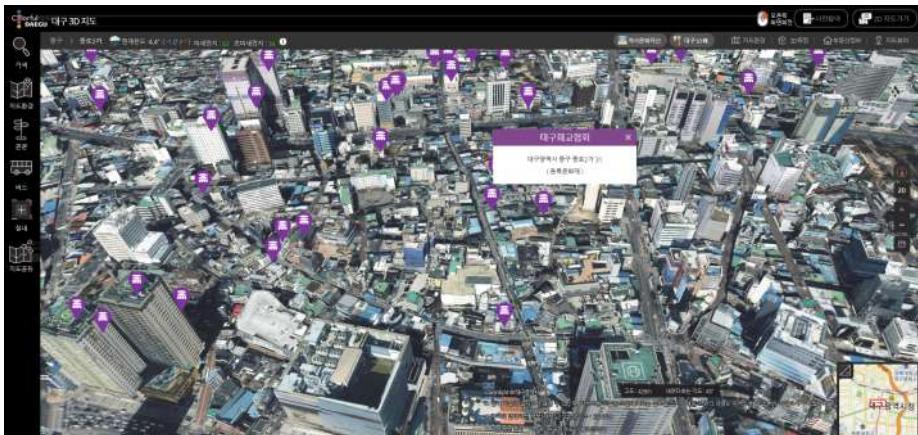
연도	예산(억원)	조사 지역	지자체
2020	50	대구, 경북, 강원	49
2021	66	서울, 인천, 경기	66
2022	65	부산, 울산, 경남, 충북, 충남	65
2023	42	광주, 전북, 전남, 제주	42
2024	9	대전, 세종	6
5년	232억 원	-	228곳

7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를 제외한 문화재와 향후 문화재로써 보존할 가치를 있는 것들 중 그 유형이 건조물 또는 역사유적인 것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DB시스템

사진: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관리시스템(문화재청 내부자료)



[대구 3D지도포털 역사문화자산 보기 기능](#)

주 : 문화재청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대구광역시가 추진한 3D포털제작 사업으로, 역사문화자산 보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출처 : 대구광역시 3D지도포털(<http://3d.daeju.go.kr/>)

6. 산림청

◆ 관련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정지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재정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청 훈령 제1471호)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산림청 훈령 제1347호)

◆ 사업현황

산림청 한옥관련 예산 지원 현황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	목재산업과, 지방자치단체	2021년~ 2024년	-	-	-	-	-	13.5억 76)
귀산촌인 주택구입 지원*	산림복지정책과, 지역산림조합	2016년~ 현재	50억 ⁷⁷⁾ 청업자금 포함	240억* 청업자금 포함	5억	10억	10억	10억
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 융자지원*	목재산업과, 지역산림조합	2018년~ 현재	-	-	5억	10억	10억	10억
공공목조건축 우수사례 포상	목재산업과	2019년~ 현재	-	-	-	4개소	5개소	6개소

*2018년부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를 세분화

76) 목재도시조성 로드맵 개발 500백만원, 목재도시조성 시범사업 3개소 750백만원, 목재도시지원단 운영 100백만원

77) 2016년도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 2017년도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확대

1)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

◆ 소관부서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지방자치단체

◆ 사업개요

산림청의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이와 어울리는 목조주택(주거환경개선), 생활SOC 목조건축 등을 통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목재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SOC 목조건축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의 부처협업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며, 본 사업은 목재특화거리 조성에 집중하여 시행한다. 광역시, 시 단위, 군 단위 3개 지역에 목재친화형 목재도시조성 시범사업⁷⁸⁾을 실시하여 성과분석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지원내용

-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시범사업 3개소 (개소당 50억원 규모)
- 국비 100%, 지자체 보조사업 50%

◆ 추진절차



78) 1년 설계, 3년 조성

2) 귀산촌인 주택구입 응자 지원

◆ 소관부서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복지정책과, 지역산림조합

◆ 사업개요

귀산촌인⁷⁹⁾이 안정적으로 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정착자금을 지원하여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지원분야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건축·리모델링

◆ 지원자격

귀산촌 후 5년 이내인 자, 주택자금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 필요

◆ 지원내용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응자100%)
- 주택구입 세대 당 75백만원 이내
- 귀산촌 예정지 관할지역 산림조합에 신청(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79) 귀산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를 말함

3) 국산 목조주택 신축자금 융자 지원

◆ 소관부서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지역산림조합

◆ 사업개요

산림청이 2018년부터 귀산촌인 대상의 국산 목조주택 신축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목재산업의 확대와 산림자원의 선순환경에 구축을 기대하며,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국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귀산촌인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지원분야

-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국산목재를 30%이상 사용하여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건축비 1억 원 장기융자 지원
-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 보급 (귀농형 3종 : 85㎡형, 110㎡형, 136㎡형, 귀촌형 3종 : 63㎡형, 81㎡형, 108㎡형)
-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공공시설물 내·외장재로 국산목재를 이용할 경우 1억 원까지 지원, 국가기관, 공공기관으로의 확대

◆ 지원자격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 하려는 자

◆ 지원내용

- 귀산촌인이 국산목재를 사용하여 목조주택 신축 시, 세대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연2.0% 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 관할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 산림조합에 신청

산림청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폐기하고 양면한 고충실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하였습니다.

개발 모델의 특징

- 수요층 분석을 통한 농가형/귀촌형 모델개발
- 기동·보 방식의 중복구조 사용

구조공법별 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국민에게 목조주택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시공품질 및 일관된 설계의 목조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면별 및 제공서비스 이용방법

산림청 <http://www.forest.go.kr>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http://know.nifos.go.kr> 홈페이지 열람 및 다운로드

문의처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 Tel. 02-961-2729 (대표번호)
- 산림청 목재산업과 목재산업정책과 | Tel. 042-681-4291 (대표번호)

산림청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리플렛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View.do?mn=NKFS_02_01_11_06_01&cmsId=FC_003042(검색일: 2021.08.31.)

주: 2019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계획

4) 공공목조건축 우수사례 포상

◆ 소관부서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지역산림조합

◆ 사업개요

산림청은 공공기관의 목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목조건축물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를 통해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19년부터 목조건축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포상하고 있으며, 시상 시기는 매년 12월이다.

◆ 선정결과

산림청 목조건축 우수기관 선정

연도	구분	선정기관	한국여부
2019년	최우수상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관리소 남북산림협력센터	●
	우수상	경상남도 하동군청 최첨단주택 조성사업 한옥문화관	
	장려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품종재배단지 관리사 충청북도 옥천군청 전통문화체험관	●
2020년	최우수상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 우드랜드	
	우수상	강원도 삼척시 삼척활기치유의 숲 내 치유센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 숲체원	
	장려상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불실험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직지사 내 평화의 탑	●
2021년	최우수상	경상남도 하동군 목재조형물 우드 정글짐	
	우수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철원남북협력센터	
	장려상	충청북도 괴산군 산림치유센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희리산 산림복합체험센터 강원도 동해시 망상사구 생태관	

7. 행정안전부

1)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

◆ 사업개요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주도로 지역의 활력을 증대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프로그램 운영상황의 모니터링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사업유형

인구활력, 경제회복, 공간혁신의 3개 유형

◆ 지원내용

- (총사업비) 16억원(국비 8, 지방비 8) * 20년 신규사업
- (선정규모) 10개 지자체(지자체당 1~2억원, 국비+지방비)

◆ 적용사례

- 전북 고창 한옥전문인 양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구유입 사업

2020년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창군의 ‘한옥전문인 양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구유입’ 사업은 고창군의 빈집, 노후건축물을 활용해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건축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기술교육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수료한 청년들은 직접 주거시설을 개선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근로자에게 수선한 빈집을 제공한다.

- **(사업주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
- **(교육과정)** 고창청년을 위한 목조건축 교실(50명), 집수선 건축 교실(30명), 한옥건축 교실(30명) 등 3개 과정
- **(사업대상)** 귀농귀촌 및 고창에 거주를 희망하는 청장년
- **(지원내용)** 국비 50%(프로그램당 9,000만원), 군비 50%(9,000만원)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교실

사진: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기술인력양성사업단 김진수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소관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일자리경제과

◆ 사업개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문화·복지·안전 등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일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방자체단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직접 설계와 기획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가 운영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 지원내용

- 2018년 1만 명(831억 원)
- 2019년 2.59만 명(2,210억 원)
- 2020년 2.6만 명(2,350억 원)

◆ 추진절차



◆ 적용사례

• 서울시 청년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2021)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청년한옥기술자 양성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으며, 한옥수리 보조업무(사진촬영, 자재정리, 한옥기술자보조), 한옥설계, 현장감리, 한옥프로젝트 홍보, 한옥건축 대 목수분야 기술습득 및 현장업무 등의 습득을 지원하였다.

- (지원대상) 청년인력이 필요한 한옥 관련 설계 및 디자인, 목재가공, 시공, 유통, 서비스, 기술학교 등 서울특별시 내 관련업체 / 모집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서울시 내에 주민등록을 둔 현재 미취업자(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

- (지원내용) 청년이 필요한 지역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1인당 연 2,250만원) / 기타지원비⁸¹⁾(1인당 연 200만원) 지원(10%는 사업자가 부담)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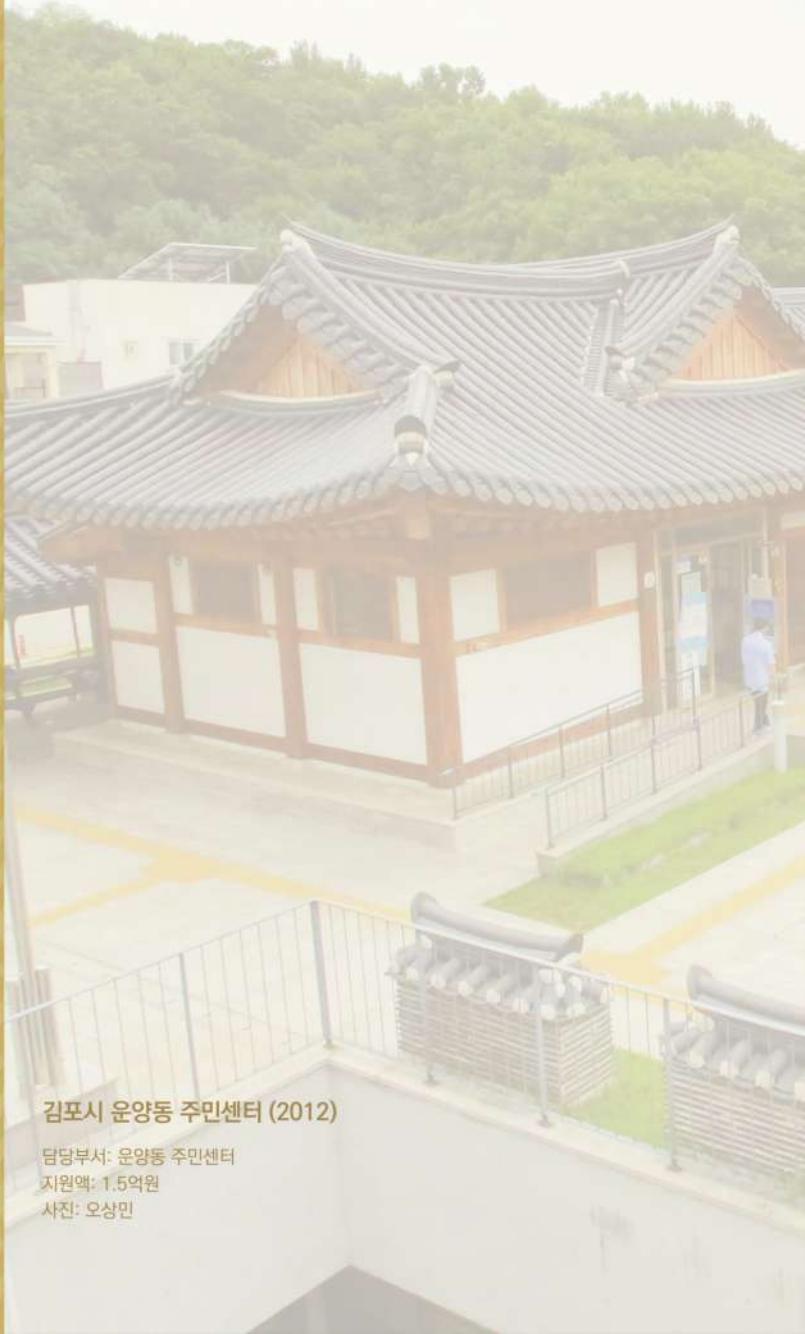


80) 유형별(지역정책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로 인건비, 교육, 주거·복지(지방비) 지원 및 유형별 최소기준 제시

81) 교육운영비, 재료비, 현장방문비 등

2021

한옥 정책·제도·사업
안내서



김포시 운양동 주민센터 (2012)

담당부서: 운양동 주민센터

지원액: 1.5억원

사진: 오상민

A photograph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with a curved, multi-tiered tiled roof. In the background, a modern city skyline with several skyscrapers is visible against a cloudy sky.

05

지방자치단체 한옥정책 추진 우수사례

1)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한옥의 관리

2) 한옥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사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한옥의 관리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서는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건축자산 진흥구역 중, 한옥 관련 공공지원 사업 또는 시행지침을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 12월, 종로구와 성북구 한옥밀집지역 9개 구역⁸²⁾에 대해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 고시하였다. 해당 지역은 기존에 서울특별시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한옥밀집지역’으로 관리하던 곳으로, 「한옥등건축자산법」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하게 되었다⁸³⁾.

서울특별시 한옥밀집구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구분	기준	현재 (2020.12.~)
대상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
지원	비용 지원	비용 지원, 건폐율·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특례,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기술지원
근거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82) (종로구 7개 구역) 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조계사 주변, 익선, 경복궁 서측
(성북구 2개 구역) 선잠단지, 앙두마을

83) 서울특별시. (2020). 북촌 등 9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12월 29일 보도자료.

현재 9개 구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 시행 중에 있으며, 북촌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외 8개 구역의 경우도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이다.

2021년 3월에는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익선, 경복궁서측의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 연결되었다. 따라서, 관리계획 상 특례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축자산 보호활용 시 전폐율 90%까지 완화 및 건축선 후퇴의무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한옥밀집구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현황

구분	종로구 (7)							성북구(2)	
	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주변	익선	경복궁 서측	조계사 주변	앵두마을	선잠단지
위치	가회동, 삼청동	권동동, 와룡동	인사동, 관훈동	견지동, 운니동	익선동	체부동, 효자동	수송동, 견지동	성북동 1가	성북동
면적(m^2)	약 1백8만	약 14만7천	약 12만4천	약 14만7천	약 31만2천	약 58만2천	약 6만6천	약 3만1천	약 5만8백
건축자산	62	14	17	9	1	19	11	2	2

위치도



출처: 서울특별시. (2020). 북촌 등 9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12월 29일 보도자료.

1) 돈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84)

개요

돈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돈화문로를 중심으로 창덕궁 및 종묘와 인접하여 있다. 북측의 율곡로와 남측의 종로에 접한 지역. 북촌·인사동·익선동과 인접하며 조선시대 한성부의 골격이자 주요 가로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진흥구역 내에는 전체 건축물 695동 중 한옥 166동으로, 한옥의 비율은 23.9%이다. 해당 구역은 1930년대 전후로 도시형 한옥이 집단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남아있는 한옥은 대부분 1940-50년대의 것이다.



동화문로 거출자산 진흥구역 한올 부포 혜화

제작: 2018년 9월 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2020) 동화문로 거ущ자산 지홍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아) 17



동화문로 거출자산 주요 보전부분 상세

즈·보이도 12-20 여리하오

출처: 서울특별시 (2020) 동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과정계획 결정(아) 41

84) 서울특별시. (2020), 문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22호(2020. 1. 16.)

◆ 한옥에 대한 특례

문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완화조건 및 완화계획을 유지하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폐율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대지안의 공지 등 추가적인 특례계획을 적용한다.

문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특례 적용 가능 항목

특례 항목	완화범위
용도지역의 건폐율(국토법 제 77조)	한옥 건축 시 건폐율 90%까지 완화
건축선의 지정(건축법 제46조)	4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출입구, 창호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도록 완화
맞벽건축과 연결복도(건축법 제59조)	세부 조정기준 완화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	한옥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주차장법 제19조의2)	한옥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정의(대수선)*(건축법 제2조)	대수선의 범위 완화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선까지 띠워야 하는 거리 완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법 제84조)	바닥면적 미산입 부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적용 예외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적용 예외, 한옥 건축기준 적용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민법 제242조)	적용 예외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원화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따름(지구단위 계획이 아니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 사항)

◆ 공공지원

문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상 공공지원 사업은 크게 ①건축자산 보호·활용 지원사업, ②진흥구역 가치 강화사업, ③연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주요 공공지원사업

구분	단위사업	계획내용	사업비 (백만원)
건축자산 보호·활용 지원	한옥 등 건축자산 119사업	- 건축물 구조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한옥 소규모 수선 직접 지원 - 건축물대장 누락 건축자산의 관리대장 작성	50
	우수건축자산 개보수 지원사업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제7조~제10조에 근거하여 개보수 비용 지원	600
	한옥 수선 등 비용 지원사업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제21조에 근거하여 수선 등 비용 지원	2,400
	한옥안전방재시설 설치사업	- 한옥건축물 대상 방재처리 지원 및 골목길 방재계획 수립	1,000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개보수를 통해 공공한옥 및 공공건축물을 활용	-
	북영천 흔적 조성사업	- 바닥표시를 통해 옛 물길이 흐르던 구간 흔적 표시 및 포장 교체	450
진흥구역 가치강화	건축자산 표식 설치사업	- 건축자산으로 선정된 옛 길 또는 건축물 전면부에 역사적 가치 등을 기록한 표식 설치	14
	건축자산 지원을 통한 명소화 사업	- 옛 길/골목길 주변, 한옥군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에 부합하는 경관협정 체결시 공공 개보수 비용 지원	600
	건축자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협의체 구성, 소유자 소유자 교육프로그램, 보전·홍보 전문가 양성 등 마을공동체 지원	10
(도시재생) 연계사업	문화문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 문화문로 보행중심가로 조성 및 경관 정비	8,469
	순라길 가로환경 정비사업	- 순라길 거점 공간 특화 및 보도 정비	2,000
	서울 가꿈가게 지원사업	- 민간건축물 저층부 리모델링 지원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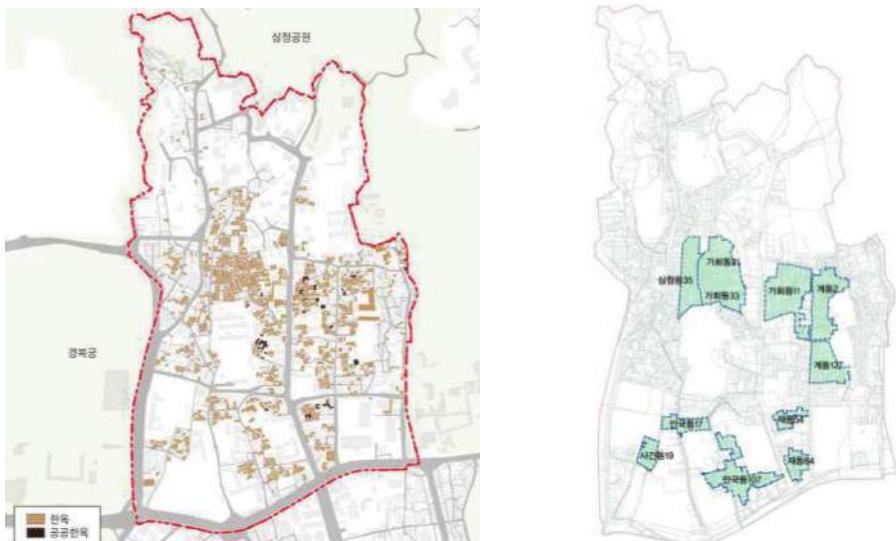
※ █ 표시된 사항은 개별 한옥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

출처: 서울특별시. (2020), 문화문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97의 표 재가공

2)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⁸⁵⁾

◆ 개요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가회동 31번지·11번지·삼청동 35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도시형 한옥이 집단적으로 건축되었다.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은 1,063동으로 전체 건축물(2,509동, 2017년 기준)의 42.3%를 차지하며, 등록한옥은 456동으로 확인된다.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역사도시 서울의 옛 모습을 간직한 주거공간으로 한옥경관이 잘 보존되어있는 북촌”이며,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동일한 경계로 관리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분포 현황 및 주거지(한옥군) 범위

출처: (좌) 서울특별시. (2020),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333.

(우) 서울특별시. (2020),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336.

85) 서울특별시. (2020),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07호(2021.01.21.)

◆ 한옥에 대한 특례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완화조건 및 완화계획을 유지하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폐율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대지안의 공지 등 추가적인 특례계획을 적용한다.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 한옥 건축 시 특례 적용 가능 항목

특례 항목	완화범위
용도지역의 건폐율(국토법 제 77조)	한옥 건축 시 건폐율 90%까지 완화
건축선의 지정(건축법 제46조)	4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선 후퇴 의무 완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출입구 등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도록 완화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	한옥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주차장법 제19조의2)	한옥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 100% 완화
정의(대수선)*(건축법 제2조)	대수선의 범위 완화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 외벽선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완화

*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완화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법령을 따름

◆ 공공지원

북촌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통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가로식재, 야간조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시행지침

구분	주요내용
공공 도로	보행가로, 골목길 및 사도,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횡단보도 설치기준
공간 광장	광장 설치기준
도시공원	소공원, 균린공원 등의 설치기준
옥외주차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설치기준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설치 기본방향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서비스시설물, 판매시설물, 통행시설물, 녹지시설물, 보호시설물, 관리시설물 등 각 시설물 설치기준
공공시각매체	교통, 보행, 통합지주 관련 시각매체
가로식재	수종선정, 식재방식
야간조명	도로조명, 보행자용 가로등, 광장조명, 가로등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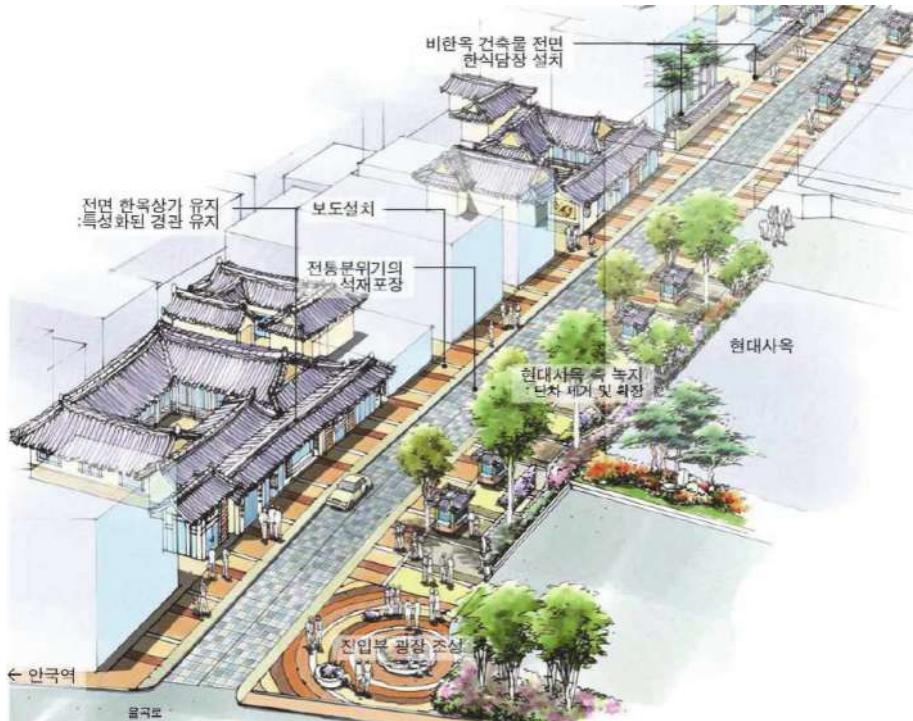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2020),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165~188 요약하여
제작성

북촌 지구단위계획 공공사업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총 면적 1,128,372.7㎡
사업기간	2020년 ~ 2025년 (5년간)
소요예산	약 68,816백만원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확충) 주민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공공주차장, 공원 등 조성 - (가로환경개선) 북촌 고유의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주요 가로의 환경개선 - (보행환경개선) 보행통로 개설, 횡단보도 신설, 이전 등 보행중심의 가로환경개선 - (경관사업) 건물입면개선, 옥외광고물 정비 등 경관협정 및 담장개선 - (전신주지중화) 품격 높은 가로경관창출을 위해 주요 가로 지중화 추진 - 건축제한(용적률, 건폐율, 높이, 용도),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옥외광고물, 민간 교통처리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문 - 한옥의 신축 및 개보수 - 경관협정 등

출처: 서울특별시. (2020),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189.

북촌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사업은 총 면적 1,128,372.7m²을 대상으로 하며, 5년 간의 사업기간을 목표로 한다. 사업내용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는데, 공공부문에는 ①공공시설의 확충, ②가로환경의 개선, ③보행환경의 개선, ④경관사업, ⑤전신주지중화의 5개 부문으로 3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촌 계동길 남측 사업 계획안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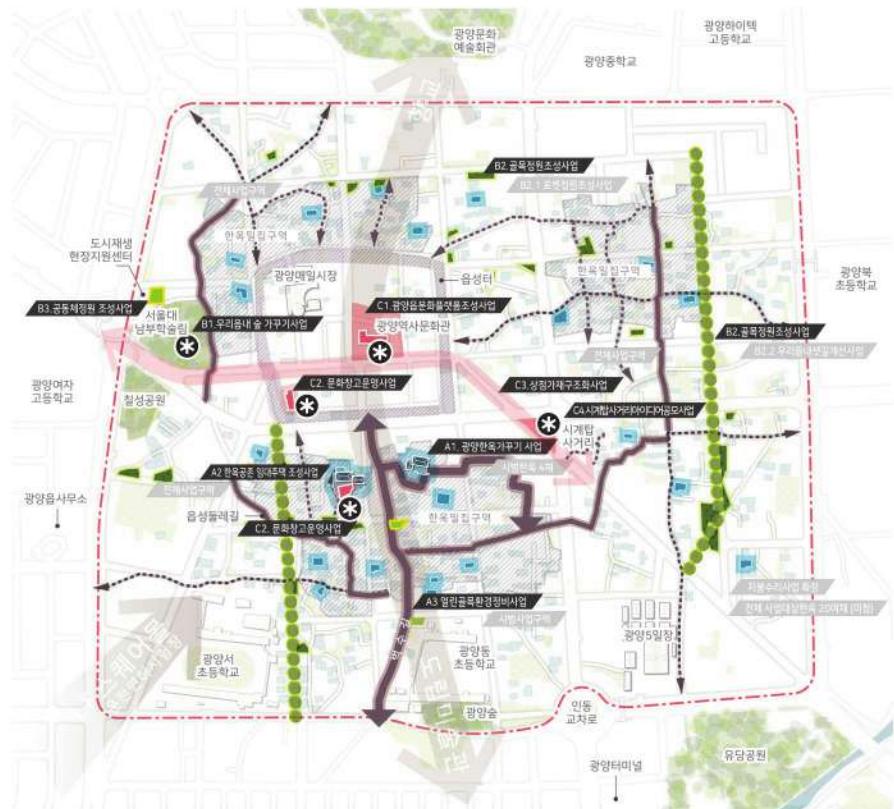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2020),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219.

한옥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사례

1)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기반 구축

광양읍은 1415년 광영읍성의 축조 아래 중심지역으로 발전해왔으나 광양시가 출범한 이후 산업과 행정 기능이 동광양으로 이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화가 진행되었다. 광양읍은 원도심 일대 건축물이 노후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과 문화유산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광양시는 1997년 원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2004년 광양읍 발전계획, 2007년 원도심 활성화 정비기본계획, 2009년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2013년 광양읍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광양읍의 쇠퇴 및 공동화 현상을 해소코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해왔다.

2016년에는 국토교통부 “2016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5년 간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약 백억 원의 예산(국비+지방비)으로 한옥 가꾸기 사업, 한옥 공존 임대주택 조성사업, 열린 골목 환경정비사업, 광양 읍성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 마중물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광양시 자체 예산을 통해서도 테마골목길 정비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는 등, 총액 약 2천 9십 9억 가량의 예산으로 광양읍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Home Improvement

- A1 광양한옥가꾸기 사업
- A2 한옥준임대주택 조성사업

Place Marketing

- B1 우리읍내 술 가꾸기 사업
- C1 광양문화 플랫폼 조성사업
- C2 문화창고 운영 사업
- C3 상점가 재구조화 사업

Open Connectivity

- A3 열린골목환경경비사업
- B2 골목정원 조성사업
- B3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 C4 시계탑사거리 시민마이디어 공모사업

Community Design

- A4 광양읍Samsung카이브 구축사업
- D1 주민네안공모사업
- D2 지역역량강화사업

■ 주거·역사재생 ■ 녹색재생 ■ 상가재생 ■ 도시재생기본도록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부처 협업사업

출처: 광양읍. (2018).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최종보고서. 82.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부처 협업사업

구분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광양한옥 가꾸기사업	국토부, 광양시	2,500	16~20
주거	한옥 공존 임대주택 조성사업	국토부, 광양시	500	19~20
역사재생	열린 골목 환경정비사업	국토부, 광양시	1,600	17~20
	광양 읍성 아카이브 구축사업	국토부, 광양시	200	17~20
	우리읍내 숲 가꾸기 사업	국토부, 광양시	900	16~20
녹색재생	골목정원 조성사업	국토부, 광양시	900	17~20
마중물사업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국토부, 광양시	400	17~20
	광양읍 문화플랫폼 조성사업	국토부, 광양시	500	17~20
상가재생	문화창고 운영사업	국토부, 광양시	1,000	16~20
	상점가 재구조화사업	국토부, 광양시	400	18~20
도시재생	시계탑사거리 시민아이디어 공모사업	국토부, 광양시	300	17~19
	주민제안 공모사업	국토부, 광양시	300	17~20
기반구축	지역역량 강화사업	국토부, 광양시	500	17~20
	도시숲 조성사업	산림청	400	16~20
부처협업사업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증기청	9,800	16~18
	읍성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문체부	12,000	16~20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국토부	27,300	16~2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체부, 광양시	3,600	17~18
	광양 공공실버주택 조성사업	국토부, 광양시	12,250	17~20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체부, 광양시	3,750	17~21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증기청, 광양시	800	16~19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사업	문체부, 전남도	45,000	16~18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문체부, 광양시	300	16~16
	서울대 남부학술림 관사 개·보수	문체부, 광양시	800	16~18
	숲속의 광양 1천만그루 나무심기	산림청, 광양시	29,123	16~18
	마을 미술 프로젝트	문체부, 광양시	1,200	18~20

구분	사업명	주관부서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지자체 사업	테마골목길 정비사업	광양시	1,000	17-19
	집수리 지원사업	광양시	1,000	21-30
	도시계획도로(소2-600)개설	광양시	6,000	13-16
	경관광장조성사업	광양시	6,000	17-20
	희망도서관 건립	광양기업	8,000	15-17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	광양시	7,700	14-17
	육묘지원 및 도시농업교육	광양시	900	16-20
	한전주지중화사업	광양시	12,000	15-20
	도시계획도로(중1-123)확장	광양시	7,000	17-20
	동서천 순환로 조성사업	광양시	2,065	17-17
	광양불고기파크 조성사업	광양시	1,500	16-17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광양시	500	17-20
총계	10,000 + 146,323 + 53,665 =		209,988	

출처: 광양읍. (2018).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최종보고서. 83. 제가공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의 비전은 “골목과 한옥, 문화로 다시 가꾸는 광양삶터”이다. 전통한옥 및 개량한옥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광양읍 일대의 특성에서 기인하여, 한옥을 매개로 한 도시재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광양읍 도시재생의 목표는 ① 일상성 강화하기, ②매력 더하기, ③교류공간 구축하기, ④함께 만들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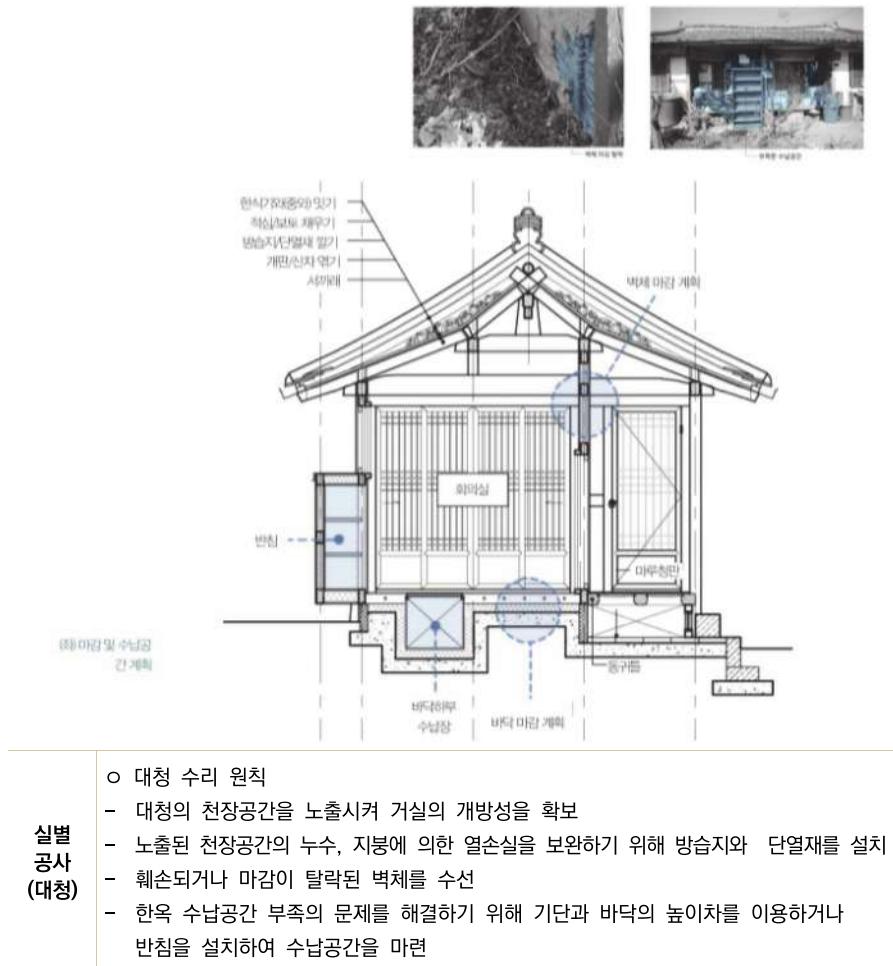
그중 “일상성 강화하기” 목표에 해당하는 “광양한옥 수리 시범사업”은 우선수리 한옥을 시범적으로 수리·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광양한옥 가꾸기”的 마중물 사업이다. 광양읍은 전통한옥과 개량한옥 등 풍부한 한옥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남부지방의 특색이 드러나는 남향의 一자 한옥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광양한옥 수리 시범대상지는 광양역과 광양읍성으로 이어지는 남문길 주변 일대지역으로, 사용하지 않는 빈 창고나 문간방 등 골목길에 면한 유휴공간과 마당, 벗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옥활용과 수선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매입가능성이 높은 한옥이 다수 위치하고 있었고, 공가를 활용한 공공 주도의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여 타 사업과 연계가 유리했다.



광양한옥 수리 시범사업 활용계획(안)

출처: 광양읍. (2018).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최종보고서. 103.

광양읍은 “광양한옥 수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우선수리 한옥을 선정하고 매입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였다. 공·폐가를 활용한 한옥수리지원센터 설립과 게스트하우스, 작은도서관, 예술가 레지던스, 카페 등 다양한 골목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수리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조사결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광양한옥의 특징을 고려한 수리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수리원칙과 수선계획을 담은 “광양한옥 재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광양한옥 수리 시범사업 활용계획(안)

출처: 광양읍. (2018).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실행계획 최종보고서. 103.

2021

한옥 정책·제도·사업
안내서



성북구 흥천사 어린이집 (2013)

담당부서: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지원액: 1.7억원
사진: 오상민

부록

1. 한옥건축기준
2.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부록 1. 한옥건축기준

[시행 2018.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0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한옥의 형태·재료·성능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의 순서로 시공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2. "처마선"이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
3.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건축법」 제2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건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3.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5.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붕)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방지 및 일사조절 등을 위해 처마깊이는 최소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4.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외벽 및 창호) 외벽 및 창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

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2. 외벽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 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각 층은 주요구조부, 난간, 눈썹지붕 및 목재 마감 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4.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①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 ③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외부로 노출되는 건축설비 및 부착물을 적절히 차폐하여 한옥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당 및 담장) ① 마당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적절한 구배를 두거나 마사도 등과 같은 투수성 마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담장은 해당 한옥 처마선 중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 및 대지의 외부에 연접한 각 지표면으로부터 2.1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록 2.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기준

[시행 2020.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51호, 2020. 12. 3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조건)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양성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춰 제9조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양성기관 자격)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기술학원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한옥관련 단체

제4조(교육과정) 양성기관은 별표1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 교수요원) ①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전문 교수요원을 갖추어야 한다.

1. 한옥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간강의를 담당하는 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행정을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3. 한옥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7년 이상 되는 자
 4. 양성기관에서 5년 이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② 양성기관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전문 교수요원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력, 경력, 관련 연구용역 실적, 논문, 특허실적 및 자격증 등) 및 교과목별 전문 교수요원 확보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등 기준) 양성기관은 별표2에 따른 시설과 교육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대장, 도면 또는 사진 등)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규정) 양성기관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규칙
2. 교육과정별 교육비
3. 교육내용
4. 교육진행 및 방법
5. 교육수료 요건

6. 강사운영 방법

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료생 관리) 양성기관은 수료생의 취업 및 활동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최근 3년의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한옥센터는 우수기관 인증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심사가 종료된 후에 상세한 평가사유가 포함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하기로 결정한 양성기관에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우수기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의 교육과정(제4조 관련)

구분	교육과정	교육내용
설계 ⁸⁶⁾ (150시간)	이론 (30시간)	정책 및 법규, 한옥 기초, 한옥 목구조, 한옥 건축재료, 한옥 신기술, 한옥 설계, 한옥 시공, 한옥 환경 설비 등
	설계실습 (80시간)	전통건축실측, 기초설계, 응용설계 등
	현장학습 (40시간)	주요구조부 치목 실습 및 현장학습, 답사 등
대목 (290시간) (330시간)	NCS* 교과 (290시간)	한옥시공 현장관리(1403021602_18v1), 한옥시공 치목공사(1403021605_18v1), 한옥시공 조립공사(1403021606_18v1), 한옥시공 수장공사(1403021607_18v1)
	비 NCS 교과 (40시간)	한옥용어, 한옥의 결구법, 한옥 신기술, 답사 등
	NCS* 교과 (760시간)	대목과정의 NCS 교과, 한옥시공 관리(1403021601_18v1), 한옥시공 기초공사(1403021603_18v1), 한옥시공 석공사(1403021604_18v1), 한옥시공 지붕공사(1403021608_18v1), 한옥시공 벽체공사(1403021609_18v1), 한옥시공 온돌공사(1403021610_18v1), 한옥시공 창호공사(1403021611_18v1),
	비 NCS 교과 (40시간)	한옥 용어, 한옥의 결구법, 한옥 신기술, 답사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NCS-14030216 한옥시공

86) 설계분야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교육대상으로 한다.

[별표2] 한옥 인력양성 우수기관의 시설, 교육장비, 인력(제6조 관련)

구분	세부기준
	가. 강의실 :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상(20명 기준)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5제곱미터 추가
1. 시설	나. 컴퓨터실 : 전용면적 45제곱미터 이상(20명 기준, 강의실 겸용 가능) ※ 기준인원 초과 시 1명당 1.5제곱미터 추가
	다. 실습장(야외실습장 대체 가능) : 전용면적 150제곱미터 이상(20명 기준, 시공분야만 해당) ※ 기준인원 초과시 1명당 7.5제곱미터 추가
2. 교육장비	가. 강의실 내 설치된 빔프로젝터 및 개인별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나. NCS 능력단위 훈련기준에 명시된 장비(시공분야만 해당) ※ 설계분야에 차목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경우 NCS 능력단위 차목공사(1403021605_18v1)에 해당하는 장비 필요
3. 인력	가. 교육과정의 특성과 교육 인원을 고려한 교과목별 전문 교수요원 나. 교육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2021 한옥정책·제도·사업 안내서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펴낸이 이영범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국가한옥센터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홈페이지 <https://www.auri.re.kr> / <http://www.hanokdb.kr>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디자인·제작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02-2269-9917)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2. 18.)
ISBN 979-11-5659-364-5

*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도면은 해당 보고서 및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